어린이집 평가인증

1. 기본방향 ····· 229
2. 법적근거 ····· 229
3. 사업개요 ····· 229
4. 인증 운영체계 및 과정 ····· 230
5. 재참여 관리 ····· 240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241
7. 기본사항 확인 ····· 247

어린이집 평가인증

1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2 법적근거

○ 법 제3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사업개요

○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인증지표 : 어린이집 정원·운영형태별 3종(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 전문)

※평가영역, 항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인증과정 : 3단계(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 수수료

– 신규인증·재인증 참여 수수료 45만원(100인 이상), 30만원(40인 이상), 25만원(39인 이하)

– 재참여 수수료 23만원(100인 이상), 15만원(40인 이상), 13만원(39인 이하)

– 확인방문 수수료 20~60만원(어린이집 규모 또는 확인방문 사유별 구분 적용)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정원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 위탁 수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4 인증 운영체계 및 과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신청단계

가. 신청 대상 어린이집

○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 재인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나. 신청 방법

○ 시기 : 연초 접수 개시일로부터 상시가능

○ 진행 : 기수별 모집

○ 방법 : 평가인증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신규인증, 재인증)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원하는 기수(신규인증) 또는 정해진 기수·시기(재인증)에 대해 신청

1단계 : 참여확정

가. 참여확정 자격(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동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에 한함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 지자체의 기본사항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필수항목 : 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한 어린이집

○ 기수별 모집정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 중 상기 기본사항 확인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하면 참여대상으로 확정

※상기 1단계 “가. 참여확정 자격”에서 정한 요건(처분 종료,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모두 준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참여수수료 납부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충족 시 참여확정 대상이 될 수 없음

나. 진행일정

○ 신규인증 및 재인증

-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신청을 마친 어린이집은 신청 기수의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아래 절차와 같이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시·군·구는 기수별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해당 기수에 신청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하고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참여확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 기수별 진행일정, 재인증 기수별 참여대상, 자체점검 시행 및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방법, 기본사항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안내
- 어린이집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평가인증 참여대상 어린이집으로 확정

다. 참여수수료

○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

- 참여수수료 : 45만원(정원 100인 이상), 30만원(정원 40인 이상), 25만원(정원 39인 이하)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정원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 환불

-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후
90%	50%	0%

※ 참여신청 포기 및 환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라. 참여확정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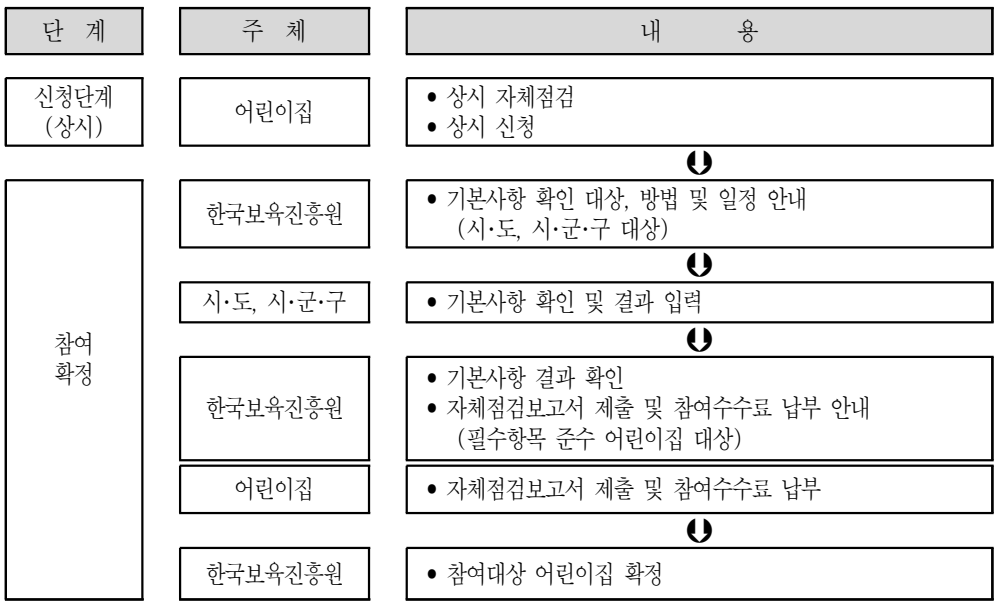

2단계 : 현장관찰

가. 현장관찰

○ 현장관찰자 파견

– 현장관찰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및 파견

– 어린이집 1개소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1일간 관찰 실시

–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1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없이 어린이집에 파견

※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여 어린이집별로 조정 가능

○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8:30~09:30이며, 관찰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

- 현장관찰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관찰대상 어린이집에 근무 또는 지원활동 불가
- 현장관찰자는 관찰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관찰 시작
- 현장관찰자는 관찰자 1인당 1개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
- 현장관찰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

> ↘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
>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출석 기준 충족
> - 현장관찰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 관찰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 ※현장관찰일에 현원·출석(정원의 1/3 이상 현원으로 재원, 현원의 2/3 이상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관찰이 중단되며, 추후 불인증 처리 예정(심의시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
>
> ②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
> - 원아명단, 실내외배치도, 하루일과표, 우수사례 관련 문서와 평가인증지표 관련 문서 등

○ 현장관찰 후 상호확인

- 현장관찰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상호 확인한 후 '현장관찰 상호확인서'에 서명

※(상호확인서 항목)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우수/부적절 사례, 평가인증 관련문서 구비 등

나. 현장관찰자 자격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함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평가인증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음

○ 기타 현장관찰자 선발 및 현장관찰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3단계 : 심의

가.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

나. 심의 진행

○ 심의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

○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개별 검토한 후, 심의기준에 맞추어 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평가서를 작성

다. 심의기준

<table>
<tr><th>심의자료</th><th>심의기준</th></tr>
<tr><td>(1단계)
심의필수확인 항목</td><td>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면 “불인증” 결정
– 참여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참여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관찰 시 발견한 부적절 사례가 심의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관찰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td></tr>
<tr><td rowspan="5">(2단계)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보고서 등</td><td>1.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td></tr>
<tr><td>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td></tr>
<tr><td>3. 보고서 등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td></tr>
<tr><td>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table>
<tr><th>우수사례</th><th>부적절사례</th></tr>
<tr><td>• 1급 교사 비율
– (40인 이상) 전체교사의 50% 이상
– (39인 이하) 전체교사의 4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또는 조리원 임용
– (40인 이상)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필, 또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 (39인 이하) 조리원 임용
•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용
•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td><td>•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정원 탄력편성 허용법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td></tr>
</table></td></tr>
<tr><td>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td></tr>
</table>

※각 기수별로 심의 종료~결과발표 직전 최종심의를 실시하여 심의 필수확인항목 해당 여부 재확인(최종심의는 1단계만 실시)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아동학대 및 행정처분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예정인 경우 심의 시 반영될 수 있음

라. 부적절사례 확인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장관찰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부적절사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통보

※심의기간까지 부적절사례에 대한 개선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부적절사례 확인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현장관찰	• 부적절사례 발생
시·군·구	부적절사례 개선확인	• 부적절사례 확인 및 개선결과 시·도 통보 • 부적절사례 미개선 어린이집 명단 시·도 통보
시·도	부적절사례 개선결과 통보	• 부적절사례 개선결과 최종확인 및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부적절사례 개선 결과 확인	• 부적절사례 개선결과 확인 • 부적절사례 미개선 시 심의 회부 등 관련 조치

마. 인증결정

○ 인증결정은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반영

구 분	반영비율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계	100%

○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는 2.25점(3.00만점)/75점(100점만점)

○ 인증결과는 인증,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

– 총점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 ⇒ 인증

–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인증유보(신규인증) 또는 불인증(재인증)

–“심의 필수확인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 불인증

※단, 해당 시설이 참여변동사항 중 ①소재지 변경 또는 ②정원·유형 변경으로 다른 지표를 적용해야 할 경우 또는 ③대표자 변경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될 때는 시설에서 희망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실시 가능하며, “5. 재참여 관리”의 절차 및 수수료를 준용

※재인증 참여과정중 참여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 시작일)~현장관찰 이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의 중복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인증결과	총점	영역별 점수
인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이상
인증유보(신규인증) 불인증(재인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 신규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은 인증결과 발표일부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증결과 확인 가능

바. 인증유효기간

○ 인증 결과가 발표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인증유효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재인증 사전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일정을 변경하여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변경 전 참여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 어린이집 운영을 6개월을 초과하여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 전 까지 인증유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6.3.30일부터 시행예정)

사.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 확인 후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

-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협조 요청
-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④ 시·군·구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통보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처리 •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협조 요청 •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어린이집 /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후처리 협조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대표자 변경 및 어린이집 운영을 6개월을 초과하여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시·도에 통보

아. 인증서,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배부

※인증현판 발급의 경우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함(재인증 어린이집은 기발급된 현판 사용)

자. 참여변동사항 확인

○ 인증 참여중인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을 받은 경우

-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정원·운영형태가 변경된 경우(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과정 중“심의 필수 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한다.

-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불인증”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차. 참여변동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참여변동사항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참여 어린이집

-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재인증의 경우 참여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시작일))~결과발표 전에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낸 업무연락 및 결과발표 전 설문지를 통해 참여변동 사항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통보받은 참여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시 ‘심의 필수항목 확인’ 단계에서 반영

5 재참여 관리

○ 신규인증 참여 어린이집 중 인증심의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

○ 재참여 단계별 절차

➢ 재참여신청 ⇒ 재점검기간(2개월) ⇒ 재관찰/재심의(1개월 내외) ⇒ 결과통보

○ 재참여 신청

– 지정된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 신청 및 재참여 수수료 납부

– 재참여수수료 : 23만원(100인 이상), 15만원(40인 이상), 13만원(39인 이하)

– 환불 : 재참여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재참여신청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전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후
100%	50%	0%

○ 재관찰/재심의

–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어린이집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재관찰 진행

–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기본사항 및 우수사례·부적절사례를 재확인

○ 재참여 결과

– 재참여 인증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불인증일 경우 해당 참여과정은 모두 종료

재참여 인증결과	총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이상
불인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으로 제출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

인증발표 시기	1 ~ 6월	7 ~ 12월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상반기 (익년 5.1. ~ 6.15.)	하반기 (익년 11.1. ~ 12.15.)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 원장이라 칭함), 신임 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원장이 교체된(임면 보고일 기준) 이후 실시되는 3회차 교육 내에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 교육장소 및 일정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에 안내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 원장 교육을 기 이수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원장으로서 평가인증 참여이력이 있는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신임 원장 교육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됨

※ 면제대상 신청기한은 3회차 교육 신청마감일

○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다. 확인점검

○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을 확인

- 기본점검 : 간소화 지표(2차지표 중 30항목), 평가인증 필수항목, 부적절사례 확인
- 재점검 :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부적절사례 확인

○ (결과반영) 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상시 품질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사항을 안내하여 어린이집의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재점검을 실시하고 인증 유효기간 감축

- 기본점검 결과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기본점검 점수가 기준 미충족일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점검을 실시
- 재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및 2차 재점검 실시

※ 재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인증 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확인점검 결과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자체로 통보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결과 회신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재지 변경
- 정원·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 원장이 변경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신임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 미이수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마.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처분 확정 사실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협조 요청

※ 인증취소 처분시점부터 인증취소 효력 발생

⑤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취소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사유 발생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사유 발생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처분 사전통지 후 인증취소 처분 통지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처분 사전통지 • 사전통지 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처분서 통지 • 시도 및 시군구에 인증취소 처분내용 통보 및 협조 요청
어린이집 /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후처리 협조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바.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신청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중 확인방문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아래의 신청 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방문을 신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운영형태 변경 : 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 : 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신청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 증빙서류 : 변경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 확인문서*,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확인 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 이후 발급)도 함께 제출

<유의사항>

○ 확인방문의 미신청 또는 수수료 미납에 따른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중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정해진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 확인방문 수수료
- 확인방문자 파견인원에 따라 1인(20만원), 2인(40만원), 3인(60만원)
-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은 통보된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확인방문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구 분	확인방문자 파견 전	확인방문자 파견 후
환 불	100%	0%

※ 확인방문 신청 포기 및 환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 확인방문 실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확인방문자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확인방문자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
  - 확인내용 :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
- 그 외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 확인방문자 1인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
  - 확인내용 :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평가인증 지표 중 해당 영역

40인 이상 및 장애아전문 : 1영역 보육환경, 5영역 건강과 영양, 6영역 안전
39인 이하 : 1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4영역 건강과 영양, 5영역 안전

※재인증 참여과정 중 참여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 시작일)~현장관찰 이전 확인방문 사유 발생에 따라 확인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이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 인증유지 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 단, 대표자 변경에 따른 확인방문 미신청 또는 자체포기 하는 경우 인증종료일자는 확인방문 사유 발생일 전 까지로 하며,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유효기간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자는 확인방문 결과통보일로 함

○ 확인방문 결과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방문 실시 익월 중순경에 해당 어린이집의 확인방문 결과를 지자체 및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7 기본사항 확인

가. 필수항목 : 9항목

항 목	평 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참조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항 목	평 정	평정기준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 기록 검토
	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나. 기본항목

평정	구분	평정기준	감점
10점 만점에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8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4점
		※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경우에도 운영정지 산정기간에 따름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이 3백 만원 이상인 경우	5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이 3백 만원 미만인 경우	3점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2점
	원장 자격정지,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제4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6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3점
	보육교사 자격정지,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점
		–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2점
		※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	
	시정명령*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2건 이상	2점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1건	1점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아래의 사항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세입, 세출)예·결산서 구비 : 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지출 기록 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 :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결제, 계좌입금 ※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	2점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 전체 감점 점수가 10점을 초과 할 경우 10점까지만 감점 처리

3~5세 누리과정

1. 3~5세 누리과정 개요 ····· 253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 254
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 257

3~5세 누리과정

1 3~5세 누리과정 개요

가. 개요

○ 만3~5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 운영

– '11년 누리과정 도입을 확정(만5세는 '11년, 3~4세는 '12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후 '12년 3월 만5세아, '13년 3월 만 3~4세아에 대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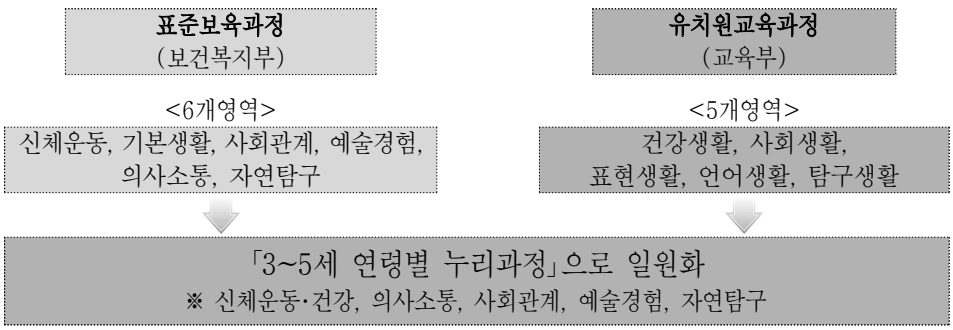

나. 소요재원 및 관리체계

○ 누리과정을 도입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예산을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15년부터 누리과정 재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 아동 1인당 22만원은 보육료, 7만원은 만3-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활용

○ 관리체계는 복지부–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어린이집 현행 체계 유지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가. 지급절차 총괄

○ 시·도는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포함)를 제외한 예산에서 관할 시·군·구별로 월별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지급

◇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
- 매월 1일 24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시 · 도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기준(원칙)으로 10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아동
  (다만, ① 1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5월1일)인 경우는 익일 24시 기준 ② 3월은 연도전환, 반편성 등 고려 별도 안내)
  ※ '16년은 4월부터 지급절차 변경방식 적용(3월까지는 기존 지침의 절차 적용)
- 행복e음 상 누리과정 보육료 자격(만0-2세→누리 만3-5세)으로 직권변경 처리된 만2세 아동(1/2-3/1일생)이 만3세반으로 편성된 경우 포함
- 만3-5세 외국국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연수를 이수한 교사

① (어린이집) 매월 10일(24시)까지 보조금(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당월 1일부터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기한까지 미출석 중인 아동은 신청대상 아님
단, 신청일 경과 후 해당아동이 당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어린이집은 출석부 등 증빙 가능한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및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 가능 (예시: 3월분은 5월까지 신청 가능)

② (시·군·구) 매월 17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보조금 정정(추가, 삭제)·승인
- (어린이집 신청마감일 전) 신청된 아동 및 교사에 대한 추가·삭제, 반려 가능
- (어린이집 신청마감일 후) 교사만 추가 · 교체 가능, 아동 추가·삭제, 교사 삭제, 반려 불가

※ 시·군·구에서 운영비(아동) 추가 시 보육료 급여기준일이 당월 1일 이전에 책정되었으며, 입소일이 1일 있었으나 생성일 당시 입소처리를 누락한 아동에 한하여 예산 생성 대상자로 자동 추가됨

③ (시·도) 매월 18일 보조금(처우개선비, 운영비) 예산 및 단가 확인 후 확정

④ (시·군·구)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

▌업무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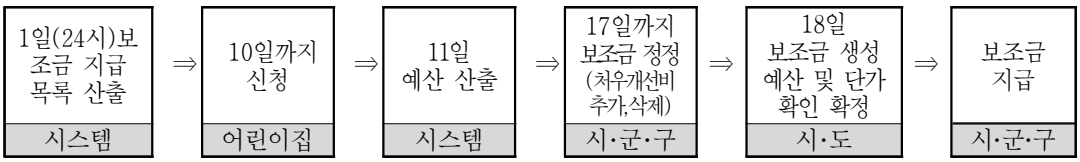

※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지급일정 변경 가능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00천원 지원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00천원 지원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00천원, 2명 이상은 월 300천원 지원

○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교사 계좌로 송금

○ 보조금 신청일 이후 담임교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은 임면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체처리

※교체할 교사는 임용일이 매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교사로서 누리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한함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예시 A광역시에 만3-5세 누리과정 자격(생성기준) 아동이 100명(3-5세 누리과정반 아동 90명 + 3-5세 누리과정 장애아동 10명)이라고 가정
> ① 해당 시로 700만원 교부, (100명×7만원)
> ② 해당 시에 산출한 처우개선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700만원 중 200만원은 만3-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출
> ③ 500만원을 110(일반아동 90명 + 장애아 10명×2)으로 나누면 비장애아 1인당 4.55만원, 장애아 1인당 9.1만원 할당
> ④ 시·군·구에서 어린이집별로 누리과정 자격아동 수에 따라 1인당 산정한 금액 지급

○ 지원조건

- 당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해당 월 출석일수가 월 0일인 경우 미지원,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에 지원 대상
- 단,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 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용범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그 밖의 시·도(시·군·구)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 시·도(시·군·구)에서는 지출항목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적용할 수 있으며,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차입금 상환,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사용은 제한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에 우선 활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 원칙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누리과정(일반아동)	누리과정(장애아동)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2개반 이하	8개반 이하	우선 활용 권장
3-4개반	9-14개반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5-7개반	15-20개반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8-10개반	21개반 이상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11개반 이상	-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반 수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수

• 보조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누리과정(비담임)보조교사'로 등록

☞(등록) 2016년 보육사업안내(Ⅳ.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 참고

◇ 자격 조건 :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장애아반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포함)
◇ 담당 업무 :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
*연가 등을 사용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체교사와는 다름
◇ 근로 조건 :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 계약 체결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78만4천원(4시간 기준)* 이상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부담(누리과정운영비에서 지출)

*보조금 단가 확정일(매월 17일 24시) 이전에 1일자로 임용 등록 필요

• 시·군·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월 78만4천원×미채용 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됨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가.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 1·2급 보육교사, 특수교사를 원칙으로 함

- 1급 보육교사 우선, 경력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권고
- '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을 담당할 교사는 특수교사 또는 장애아특별직무 교육을 이수한 1·2급 보육교사로 함
-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은 불가

※ 영유아 20명 이하 어린이집(시행규칙 별표 2) 및 도서·벽지·농어촌지역 특례 인정 어린이집(21-39인, 법 제52조)의 경우 원장 겸직은 가능함(단, 처우개선비는 미지급)

※ 보육교사 겸직 원장도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해야하며 이수시 운영비 지급가능

-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한하여 2015. 3. 31. 이전에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3급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예외 적용 (2017.3.31. 까지)

※ 2015.4.1.일 이후에는 3급 보육교사를 신규로 누리과정반의 담당교사로 할 수 없음

○ 3-5세 누리과정 교사 연수 반드시 이수

- 미이수시 처우개선비 및 해당 반 아동에 대한 운영비 미지급

※ 2012년 5세 누리과정 이수자도 2013~2014년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미이수시, 누리과정이 2013년 전면 개편되었으므로 2015년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이수 필요 (유치원 교사도 동일)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교사 교육이수 여부 등 이력 관리(타 지역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이수 유효)

나.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개설, 대체교사, 신규 유입 교사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누리과정 연수교육을 이수한 교사 명단을 교사 이력관리에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수사실을 확인

○ 시·도(시·군·구)

- 누리과정 연수 대상 명단확정, 장소 대관 지원 등 협조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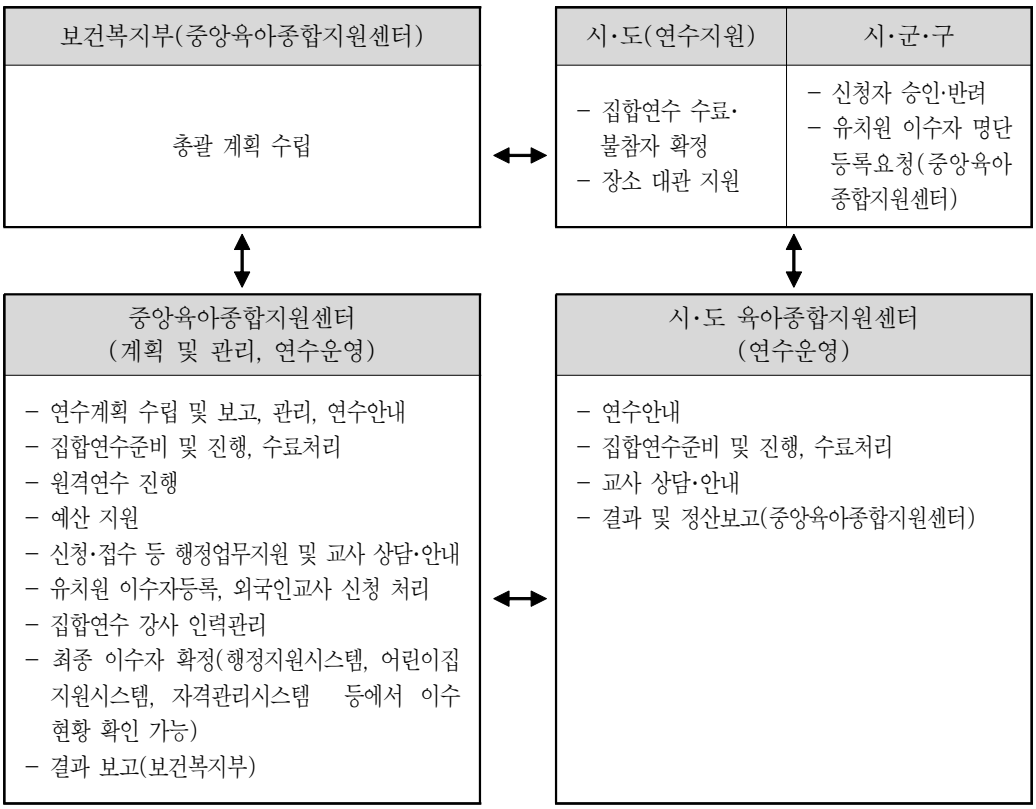

▌3-5세 누리과정 업무체계 분류▐

1.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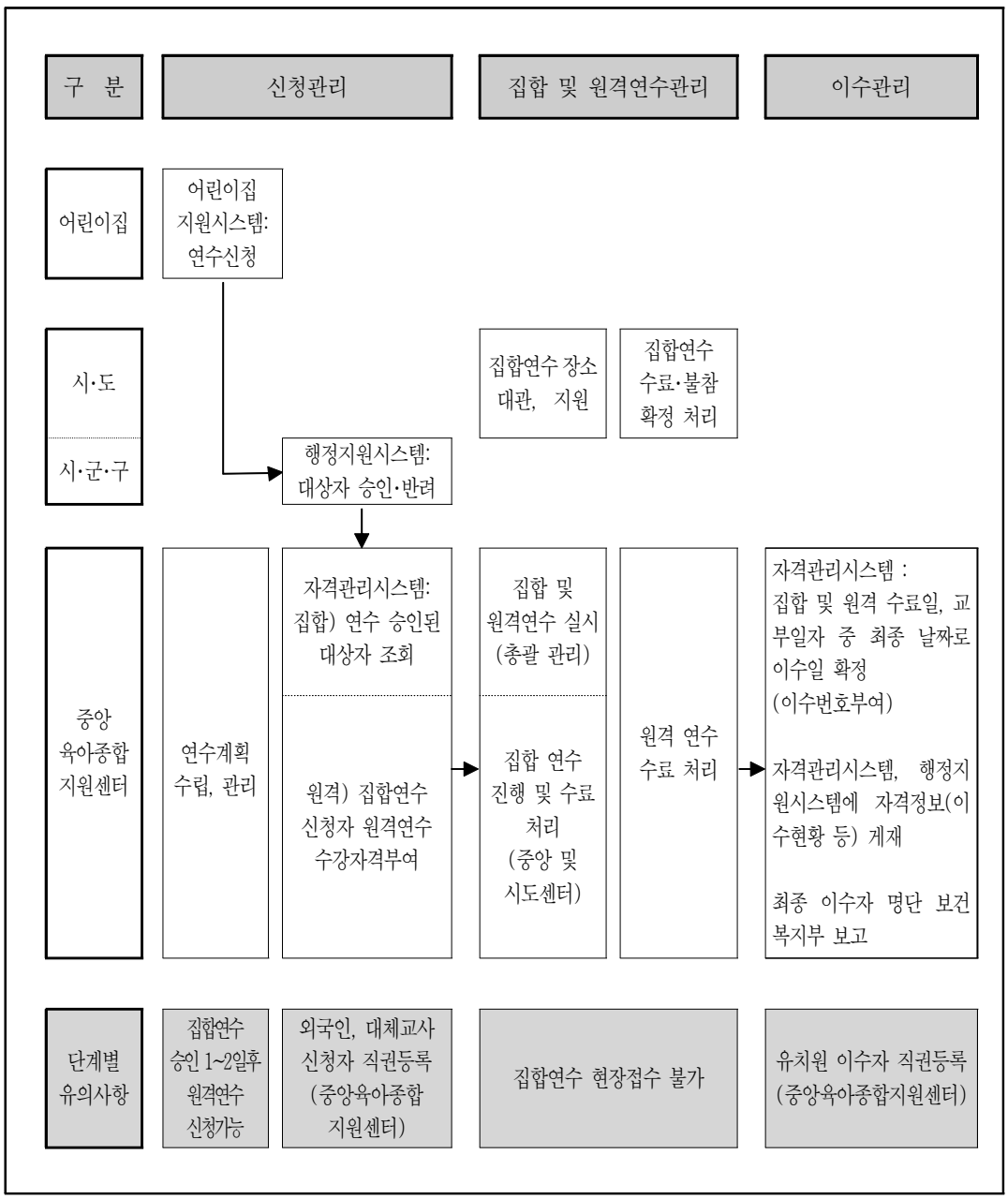

2. 업무체계 분류

주요내용	복지부	시 · 도	시 · 군 · 구	협조기관
1. 만3-5세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및 단가 등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 마련	○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예산 집행 - 시·군·구에 교부	○ 시·도에서 교부받은 금액을 개발원에 예탁하여 어린이집에 지원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보장결정)보육담당부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보육료 예탁 등 관련 업무협조
2. 3-5세 누리과정	○ 누리과정 고시, 해설서, 지침서 및 프로그램 개발	○ 해설서, 지침서 등 개발 관련 업무협조	○ 해설서, 지침서 등 개발 관련 업무협조	◆ 육아정책연구소 - 해설서, 지침서 등 개발지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해설서, 지침서,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및 홍보 *해설서, 지침서, 프로그램 보급 (www.표준넷.kr)
3. 만3-5세 담당교사 연수	○ 교사연수 총괄계획 수립	○ 업무협조	○ 업무협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사연수 실행계획 및 관리 총괄 지원(예산지원 포함) *신청·접수 등 행정업무지원 및 교사 상담·안내 등
3-1. 집합연수	○ 정책 총괄	○ 교육장소 대관 지원 ○ 집합연수 수료·불참자 확정 및 관리	○ 누리과정 연수 관련사항 안내 ○ 집합연수 신청자 승인 및 반려 처리 ○ 어린이집별 만 3~5세 담당 예정교사 등 교사연수 대상자 선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준비 및 진행, 수료처리 - 강의 인력 관리 ◆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준비 및 진행, 수료처리 - 교사상담·안내
3-2. 원격연수 (사이버교육)	○ 정책 총괄	○ 업무협조	○ 업무협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원격연수 진행

주요내용	복지부	시·도	시·군·구	협조기관
3-3. 이수자 등 관리	○ 정책 총괄	○ 업무협조	○ 유치원 이수자 및 외국인교사 명단 등록요청(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치원이수자등록·외국인교사 신청처리 - 최종 이수자 확정 - 누리과정 연수 결과보고(보건복지부) ◆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 결과 및 정산보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4.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및 관리	○ 만3-5세 누리과정 운영기준 등 마련	○ 시·도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교부금을 처우개선비, 운영비로 시·군·구에 교부	○ 시·도로부터 교부받은 교부금 집행 - 처우개선비 : 교사통장에 입금 - 운영비 :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누리과정 운영 모니터링 등 업무 협조
5. 사후관리 및 컨설팅	○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기준 등 마련	○ 누리과정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 누리과정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대상 누리과정 컨설팅 실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누리과정 운영기준 준수 등 사항 모니터링
6. 홍보	○ 리플릿 개발 등 홍보 총괄	○ 리플릿 보급 등 홍보 협조	○ 리플릿 보급 등 홍보 협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시간제 보육

1.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 265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 266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 275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 277

시간제 보육

1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가. 정의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법령상 명칭은 일시보육이나, '14년 이후 시간제보육(시간차등형보육) 명칭 사용

나.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다. 지원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시범운영 중으로 추후 운영 지속여부 검토

라. 사업 기관

○ (제공기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관리기관) 사업 참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 설치 근거

○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일시보육 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

<table>
<tr><th>필수항목</th><th>어린이집</th><th>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th></tr>
<tr><td>시간제보육 정원</td><td colspan="2">○ 5명 (1개반 기준)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총정원 내 포함</td></tr>
<tr><td rowspan="3">보육실 확보</td><td colspan="2">○ (공통) 보육실 2.64㎡(영유아 1인당)</td></tr>
<tr><td>○ 어린이집 전용면적 4.29㎡(영유아 1인당)</td><td>○ 영유아의 실제적 보육 공간
21.45㎡(4.29㎡×5명) 이상
＊ 영유아의 실제적 보육 공간 :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모두 포함</td></tr>
<tr><td colspan="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른 보육실 기준 충족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표 1]의 제1호 및 제3호 중 층수제한, 조리실, 목욕실, 놀이터는 제외 가능</td></tr>
<tr><td>비상재해 대비시설</td><td colspan="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사’ 요건 충족 필수</td></tr>
<tr><td>소방설비 기준</td><td colspan="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노유자 시설’중 아동관련 시설로서 요구되는 ①소화설비, ②경보설비, ③피난설비 등의 요건 충족 필수</td></tr>
<tr><td rowspan="2">보험가입</td><td colspan="2">○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5항</td></tr>
<tr><td>○안전공제회 ‘일시보육 특약’ 가입 의무
＊‘일시보육 특약’은 ‘시간제 보육’으로 명칭 변경 후에도 동일 적용됨</td><td>○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시간제보육 아동’적용 여부 확인 또는 추가 가입 의무</td></tr>
</table>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참고사항	○(공통)「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기준	
	○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점수가 90점 이상 유지) :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6개월 이내 재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정원충족률 50% 이상 유지 - **사업계획 공고 후 지정신청서 제출월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은 종일반 아동을 기준으로 함 ** 종일반 아동의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아동 제외 *** 신규참여 기관에 한함(반증설의 경우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설치기준은 운영기간 내 유지되어야 하며, 운영 중 설치기준 변경사항 발생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기충족된 것으로 보며 시간제보육반은 평가인증대상에서 제외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수행기관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관리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괄하며, 제공기관의 수에 따라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인력의 배치와 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인력 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분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직종(직위)	○ 보육교사(담임교사)	
채용기관 및 관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조건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 경력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담당업무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어린이집 외 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채용하여 파견하되, 참여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구 분	시·군·구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직위)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분류 :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채용조건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 인력으로 채용>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업무	○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 ○ 시간제보육 예약·취소 관리 ○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컨설팅 등) ○ 시간제보육 홍보 및 안내 ○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교사 채용 및 관리 ○ 그 외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	
비고	○ 시·도 관리기관의 경우, 제공기관 수가 10곳을 초과할 경우 운영비 및 인력 배치 지원 비율 조정 고려 가능 ○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2016년은 유예기간으로 둠)	

* 시간제보육 관리자의 경력 반영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경력 수동 입력(직위 :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적용시점 : 2015. 1.1~)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2016년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 -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구 분	2016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내용) ○ (국공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호봉별 단가 100% 지원,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민간·가정 어린이집)보육교사 4호봉 단가 지원,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만원 별도 지원(요건 충족 시) (운영비 지원내용) ○ 월 32만원 (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정부 기관에 한하여 별도 선정

* 월 이용건수 10건(1개반 기준) 미충족 시, 해당 월 포함 2개월까지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능
(※단, 서비스 개시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 서비스 제공준비 완료 및 (육종지)행정지원시스템에서 해당 기관 조회 가능 시점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2016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다만, 지역 내 최초 제공기관 서비스 개시 전월부터 지원 가능)
	(인건비 지원내용)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지원내용) ○ 월 50만원(1기관)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마. 회계 관리 기준

근거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은 해당 규칙을 따름(제2조의2)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집행 기준

구 분	2016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 불가 (2016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 원칙 (단, 기본공과금 등 구분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제보육실 면적 또는 아동수 기준으로 N분)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지급에만 사용 가능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등의 임시직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리모델링비(자산취득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간제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도(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추진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시간제 보육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참조

○ 회계서류(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관리

-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회계 서류에 시간제보육 사업 포함하여 표기 가능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집행 기준

구 분	2016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불가 (2016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와 관련된 사항 집행 원칙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지급에만 사용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 회계서류(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관리

바. 운영 기준

1)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

구 분		시간제보육	
		기본형	맞벌이형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취업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 (정원기준) 종일제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5명 이상의 정원 확보

○ (교사 대 영아비율) 1:5(24개월 미만, 장애아 등이 예약한 경우 1:3)

반 구분	교사 대 영아비율
24~35개월 영아만 보육하는 경우	교사 1명 : 영아 5명
6~23개월 영아가 포함된 경우	교사 1명 : 영아 3명
등록 장애아가 포함된 경우	

* 시간제보육반은 초과보육 불인정

3) 운영시간

○ (원칙)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운영 시간	09:00 ~ 18:00				

* 제공기관의 임의적인 운영 요일 및 시간 변경 불가

4)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자격 신청

○ (구비서류)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 증빙서류

– (맞벌이형)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 여부를 증빙하고 맞벌이형 이용권을 신청

※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함

※ ‘맞벌이형’ 서비스 신청 후 유효기간 확인은

[임신육아종합포털 ☞ 보육서비스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에서 가능

▌신청 및 맞벌이 여부에 따른 제공 서비스▐

구 분		맞벌이 등 여부	
		○	×
신청여부	○	맞벌이형	기본형
	×	기본형	기본형

– (기본형)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양육수당 신청시 시간제보육 기본형 이용권 지급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증빙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취업 한부모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 아래의 서류 중 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 –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이나 소득기준 초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한부모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아래 ‘맞벌이 가정’ 또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확인
맞벌이 가정	임금 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아래의 서류 중 1부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상기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서류 중 1부 • 재직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위촉계약서 • 근로계약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일용직, 파트타임제인 경우 국세청 일용직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고용주의 임금확인서 중 1부

구 분		구 비 서 류
	고용주,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어업종사자의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축산부 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수부 고시)」에 따른 농업인(어업인)확인서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 노점,행상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군구 발급 허가증(노점, 행상 허가증 등)
장애부모 가정	성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조손가정		□ 부모의 사정(사망,이혼)으로 조부모와 아이만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층	생계급여 수급자	□ 아래의 서류 중 1부 •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국민기초생활보장 서식 32호)
기타 양육부담 가정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사이버대학 등 가정에서 수강하는 경우 불인정)
	구직 및 취업준비	□ 취업준비 입증 서류로, 아래의 서류 중 1부 •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접, 서류 접수 확인서, 구직광고게재 사실 증명서, 직업소개소 상담 확인서 등)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실업급여 별지 제83호서식) • 학원 수강증(주당수강시간 기재-15시간 이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또는 인정명세서(실업급여 별지 제 75호, 제81호 서식)
	임신, 출산, 육아휴직	□ (임신) 임신증명서(의사소견서) □ (출산)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장기입원 등 질병	□ 아래의 서류 중 1부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 입원확인서(1개월 이상) • 장기요양인정서(1등급~5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7조)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증(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014-11호)

구 분		구 비 서 류
		• 중증질환 등록증(암환자 및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015-39호 별표3)
	1개월 이상 장기부재	□ 아래의 서류 중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 병적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 • 수용증명서 등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5)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신청인원	정원의 60%(3명)	정원의 40%(2명)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준비물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2015년 신규카드 신청부터 아이행복카드(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통합카드)로 변경 * 종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4,000원)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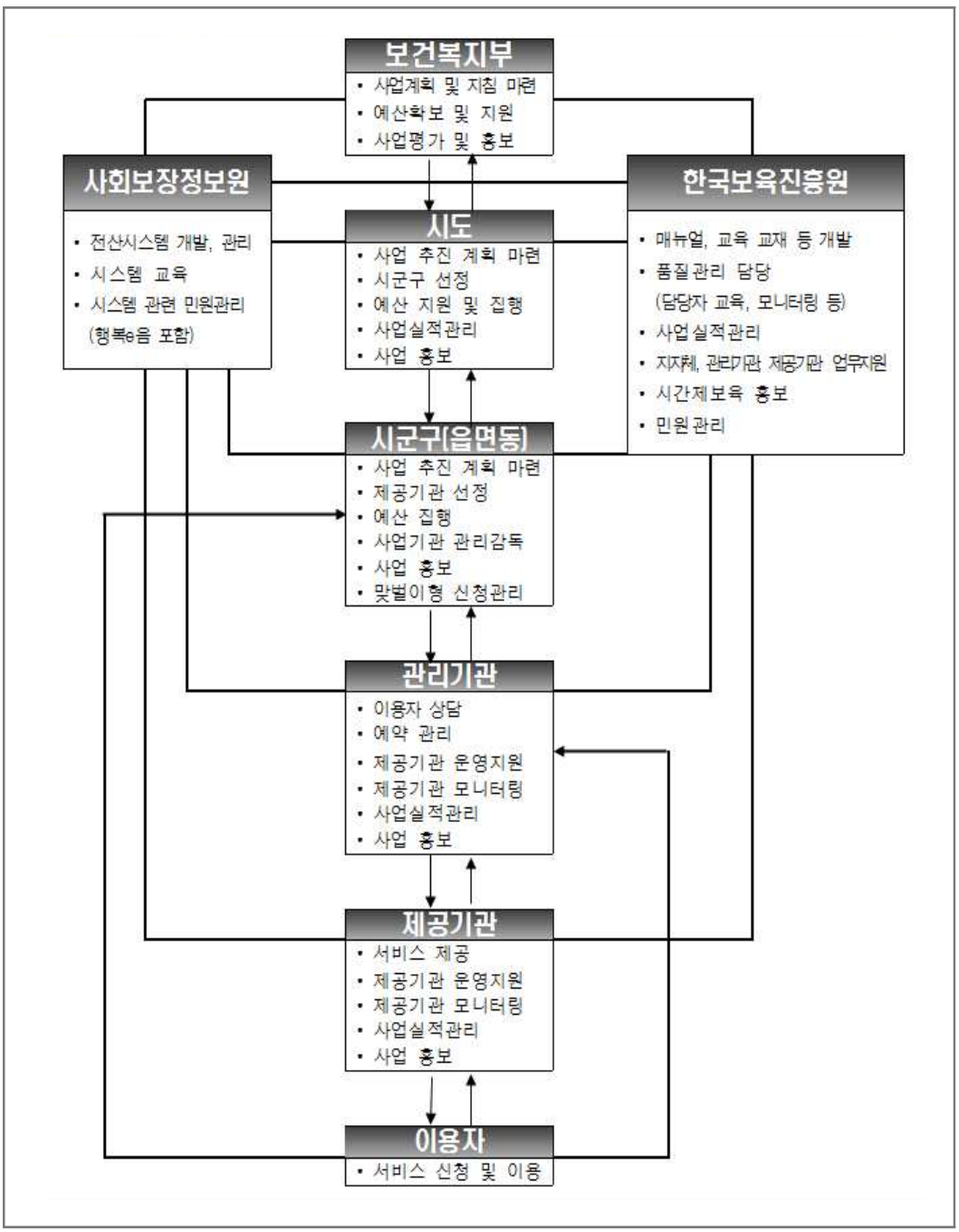

가. 기관별 담당 업무

추진 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 예산확보 및 지원 ○ 사업평가 및 홍보
시·도	사업 관리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시군구에 사업량 조정 및 예산 지원 ○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 사업 홍보
시·군·구	사업 중간 관리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모니터링) ○ 예산집행 및 실적보고 ○ 사업 홍보 ○ 사업 평가
읍·면·동	서비스 정부지원접수	○ 서비스 안내, 맞벌이형 신청·접수
한국보육진흥원	운영 총괄 지원	○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등) ○ 사업실적관리 ○ 지자체 업무지원 ○ 관리기관 업무지원 ○ 제공기관 업무지원 ○ 시간제보육 홍보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운영시스템 관리 ○ 민원관리
사회보장정보원	사업 지원	○ 시간제보육 이용 및 운영* 시스템 개발(개선) 및 운영 *신청·접수, 예약·이용·결제, 관계 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 시간제보육 관련 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 시간제보육 시스템 관련 교육 ○ 시간제보육 시스템 관련 민원관리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사업 담당	○ 시간제보육 상담 및 지원 ○ 시간제보육 예약 관리 ○ 제공기관 운영 지원 (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등) ○ 제공기관 모니터링(컨설팅) ○ 홍보 및 안내 ○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된 업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사업 담당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보육 홍보 ○ 시간제보육 자율점검보고서 작성, 제출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가. 제공기관 지정

○ 지정권자: 시·군·구청장

○ 연도내 배정된 물량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제공기관을 지정

○ 지정 절차

선정계획 공고	희망기관 신청	1차 서류심사 및 선정	현장확인	2차 최종심사 및 선정
(시·군·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공모기간 중 서식1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군·구로 제출

○ 시·군·구에서는 지정된 기관에 대해 서식2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서」 교부

* 상세 지정 요건 및 배정 물량 등은 매년 정해지며,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배정

나. 지정 취소 및 참여 포기

○ 지정취소 사유(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지정 취소 절차 : 시·군·구에서 지정 취소

– 시·군·구는 지정 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제공기관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 시·군·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취소 처분 진행
- 시·군·구는 취소 처분 확정시 시·도에 지체없이 보고
- 시·군·구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지정 취소 통보를 하고,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 조치 함
- 시·군·구는 지정이 취소된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으로 보고

○ 지정 취소일 : 처분 확정일

○ 지정 취소된 경우의 보조금 지급

- 지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시간제보육반 운영을 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간제 보육 지정기관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비를 환수

○ 참여 포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제공기관도 희망에 의하여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다만, 리모델링비를 정부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 포기 불가

- 포기를 원하는 제공기관은 지정취하원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해당 제공기관의 운영 표기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지정취소 여부 결정
- 이후 절차는 지정취소 절차에 따름
- 시간제보육 운영을 포기한 제공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2년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신청이 제한됨

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

1) 시간제보육 담당자 교육

○ 시간제보육 기관으로 선정된 제공기관 및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연 4회 기준

○ 특히 참여 기관에서는 시간제보육 신규 참여자(보육교사 포함)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

○ (대상)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횟수) 제공기관별 1~2회 / 년

○ (방법) 자율점검 및 현장방문 모니터링

– 자율점검보고서 제출(제공기관 → 관리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현장 방문 모니터링 점검(기본사항 점검 및 컨설팅 최소 연1회 이상)

*기본사항 점검 : 지자체 담당 공무원

*컨설팅 : 해당 지역의 관리기관(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수시 방문 모니터링 점검

*내용 : 시간제보육 운영 전반

*점검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파견한 자

▌모니터링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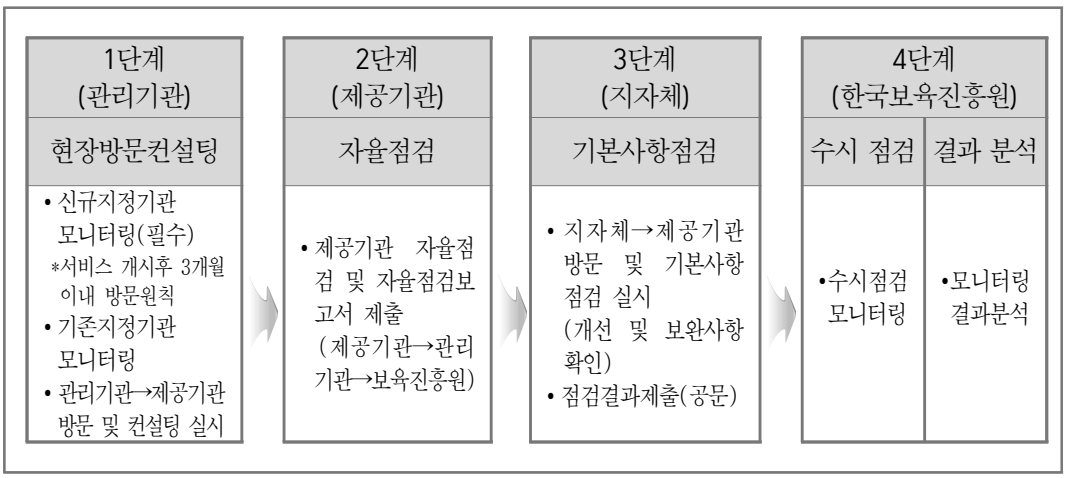

※ 기타 지정·관리 등 세부 운영 관리 사항은「2016년도 시간제보육 사업 안내」(별도 배포 예정)참조

서식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2016.3)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개요	명칭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기관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원(명) 현원(명)	홈페이지 주소

시설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비고
	명	명	

참여 기본요건	시간제보육실 확보 여부	시간제보육실 위치	시간제보육 반 수	시간제보육 정원	시간제보육실
	(가, 부)	층	개	명	㎡

평가인증 연도		평가인증 참여구분	□신규인증 □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총점만 기재)	

보육아동현황	지정신청서제출월 기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
	정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100%)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위와 같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운영계획서(시설·보육교직원 현황, 보육철학, 보육계획안, 예산서, 서비스개시일 등)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210㎜ × 297㎜[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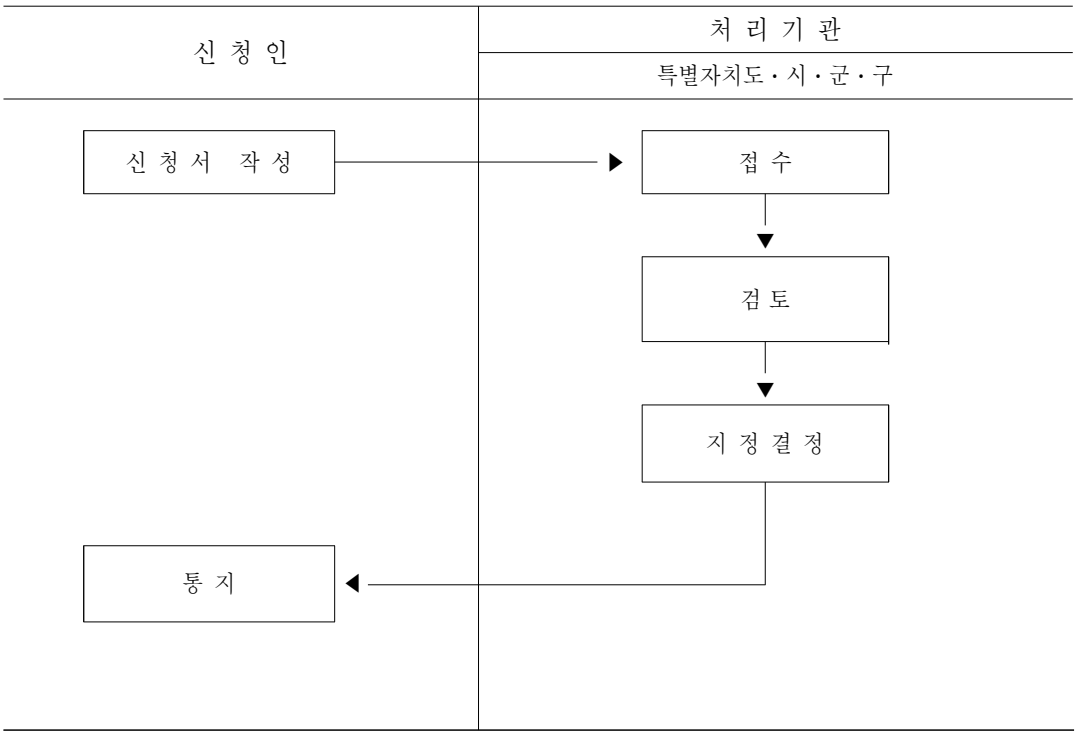

서식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서

제 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서

시설 명칭 :

소 재 지 :

시간제보육반 지정 수 : 개 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위 시설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보육예산

지원(보육료, 가정양육수당)

1. 보육료 지원 총괄 ····· 285
2. 만 0~5세 보육료 ····· 288
3. 장애아 보육료 ····· 289
4. 다문화 보육료 ····· 292
5. 방과후 보육료 ····· 294
6.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 297
7. 가정양육수당 지원 ····· 300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 적용시기 : 보육료, 양육수당 관련 변경된 내용은 '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1 보육료 지원 총괄

가.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다. 산정방식

1) 입·퇴소 아동

○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예시 3월 17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 지원액 : 220천원 × 13/26(일) = 110,000원(원단위 절삭)
> - 13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2) 계속재원 중인 아동

○ (기본원칙)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5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보육료 간 자격변경) 보육료 간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예:만0-2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1일부터 지원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16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

마. 지원시점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바.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단, 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사.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1) 지원원칙

○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2) 월(月) 중 다른 시·군·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 舊 어린이집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新 어린이집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

아.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9.19 시행)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 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면(우편) 고지

2 만 0~5세 보육료

가. 지원대상(만0세~5세)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4.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4.1.1일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6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 안내」 참고

나.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	418,000	418,000	627,000
			만1세	368,000	368,000	552,000
			만2세	304,000	304,000	456,000
			만3세	220,000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220,000	33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

** '13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3 장애아 보육료

가.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하여야 함(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1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7.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15년 11월1일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받은 경우에는 '16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1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7.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10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17.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03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17.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 반드시 장애아등급이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 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 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癎疾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438,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4 다문화 보육료

가.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09. 1. 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단,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아니함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선정 시 주의사항

- 지원대상 선정 시 가족관계 등은 행복e음(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을 통해 확인하며, 행복e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 직접 제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재한외국인 확인)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①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가능

- 다만,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제출자 및 외국인등록자 일부 해당)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경우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견 즉시 자격을 취소

※읍·면·동 담당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사실 등을 확인하여 외국국적동포 여부 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 또는 인지·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제출

다.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라. 지원시기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5 방과후 보육료

가.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나. 지원단가

1) 일반아동

○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2)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219,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월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다.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1) 보육료 지원 체계

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로 소요 예산 편성 요청

② 교육부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한 후 시·도 교육청에 예정교부

③ 시·도 교육청에서 예정 교부금액을 예산안에 반영, 심의·확정

④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하도록 요청

⑤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 교부, 시·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

⑥ 시·도 보육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시·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시·군·구에 재교부

⑦ 시·군·구 보육담당부서에서 시·군·구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보육료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이하“개발원”)에 수수료와 함께 예탁

⑧ 개발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이자지급, 정산 보고

⑨ 아이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보육료지원 결제금액을 개발원과 정산, 개발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

⑩ 개발원은 보육료 예탁금 정산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예산 교부 절차 역순으로 정산 보고가 이루어짐

2) 보육료 부담비율

구 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도 및 시·군·구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서울	20%	80%
	지방	50%	50%

※ 비고

1.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율 10%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률 10% 인하(다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하여만 적용)
2. 시·도와 시·군·구 간의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율을 준용한다.

라.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집행 및 정산은 만2세이하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체계 유지

6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시간연장형을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에서 확인
- 지원금액은 '지원계층 및 지원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아래의 기준에 따름
-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 초과 수납 금지, 다만,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
-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복지카드미소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가. 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 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단위 : 원)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000	18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기준 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시간계산 후 잔여분이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 종일제 보육을 A시설에서 받고, B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보육료 지원가능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시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9:30 이전(토요일은 15:30)에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시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 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내용을 입력(휴대폰인증 필수) 하고 이용희망자로 등록
- 원장은 신청서를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에 보관
- 보호자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변경 또는 퇴소하고자 할 경우 기존 이용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반에서 탈반·퇴소를 요청하고, 변경되는 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제출
-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시 시·군·구에 '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서식 Ⅸ-5-2>를 제출

나. 야간 보육료

○ 지원단가 :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 지원기준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24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 기준시간 : 07:30~익일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 지원기준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이용신청 :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서식 Ⅸ-5>

라.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 지원액 : 220,000원* 2/26(일)*150% = 25,380원(원단위 절삭)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7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나.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table>
<tr><th>연령(개월)</th><th>양육수당</th><th>연령(개월)</th><th>농어촌양육수당</th><th>연령(개월)</th><th>장애아동
양육수당</th></tr>
<tr><td>0~11</td><td>200천원</td><td>0~11</td><td>200천원</td><td rowspan="3">0~35</td><td rowspan="3">200천원</td></tr>
<tr><td>12~23</td><td>150천원</td><td>12~23</td><td>177천원</td></tr>
<tr><td>24~35</td><td>100천원</td><td>24~35</td><td>156천원</td></tr>
<tr><td rowspan="4">36 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td><td>100천원</td><td>36~47</td><td>129천원</td><td rowspan="4">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td><td rowspan="4">100천원</td></tr>
<tr><td>100천원</td><td rowspan="3">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td><td>100천원</td></tr>
<tr><td>100천원</td><td>100천원</td></tr>
<tr><td>100천원</td><td>100천원</td></tr>
</table>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예) '16년 기준 '09년생 아동의 경우에는 취학유예 시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누리과정 3년 지원 여부 불문)하나, '10. 1.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에는 누리 과정 3년 지원 유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이 되는 다음 날(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하여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다.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변동자격 관리를 신속히 처리

라.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마.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바.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양육수당 신청당시 유효한 주민번호 발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지급방법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사.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아.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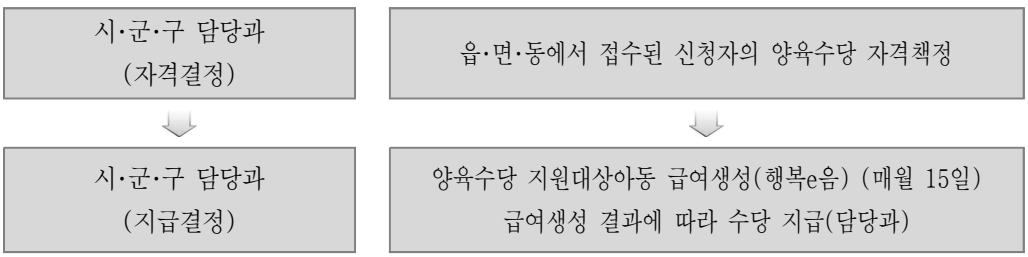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본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양육수당 지급)

X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 공통 사항 ····· 305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 307
3. 장애아 보육 지원 ····· 311
4.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 320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 323
6. 방과후 어린이집 ····· 333
7. 기본보육료 지원 ····· 335
8. 차량운영비 지원 ····· 341
9. 교재·교구비 지원 ····· 342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 343
11.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358
12.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 364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 367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 369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 371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374
17.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377
18.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 383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 공통 사항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201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직장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 단, 민간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아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기준 인건비 지원중단,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임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 제한적(2002.1.1.일 현재 설립자가 설립한 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어느 누구도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인건비 지원

- 신축비 국고지원 국공립어린이집(예시 : 농촌소규모어린이집 신축(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국고지원 등 타부처 사업 포함)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자체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CIS 등록 및 승인확정필요)
- 2003년도 3월1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지자체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기준 적용 가능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1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16.1월부터 적용)"의 월 지급액을 의미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 보조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해 신청하여야 함.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 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2,702,920	1,891,910	18,804,240	1,567,020	15,445,680	1,287,140
2	23,316,360	1,943,030	19,348,680	1,612,390	15,900,720	1,325,060
3	24,077,400	2,006,450	19,945,560	1,662,130	16,549,800	1,379,150
4	24,798,120	2,066,510	20,571,960	1,714,330	16,894,800	1,407,900
5	25,525,320	2,127,110	21,204,000	1,767,000	17,266,560	1,438,880
6	27,126,960	2,260,580	22,661,040	1,888,420	18,050,400	1,504,200
7	28,086,720	2,340,560	23,621,400	1,968,450	18,840,240	1,570,020
8	28,713,960	2,392,830	24,053,520	2,004,460	19,149,240	1,595,770
9	29,542,200	2,461,850	24,710,280	2,059,190	19,779,840	1,648,320
10	30,378,360	2,531,530	25,421,880	2,118,490	20,391,000	1,699,250
11	31,427,760	2,618,980	26,345,760	2,195,480	21,214,080	1,767,840
12	32,345,280	2,695,440	27,139,080	2,261,590	21,933,000	1,827,750
13	33,039,120	2,753,260	27,833,280	2,319,440	22,528,080	1,877,340
14	33,783,000	2,815,250	28,452,840	2,371,070	23,147,640	1,928,970
15	34,526,640	2,877,220	29,073,000	2,422,750	23,742,960	1,978,580
16	35,476,560	2,956,380	29,948,160	2,495,680	24,543,840	2,045,320
17	36,195,480	3,016,290	30,592,800	2,549,400	25,138,800	2,094,900
18	36,988,800	3,082,400	31,237,560	2,603,130	25,758,720	2,146,560
19	37,757,400	3,146,450	31,881,960	2,656,830	26,353,800	2,196,150
20	38,426,640	3,202,220	32,526,480	2,710,540	26,973,240	2,247,770
21	39,557,880	3,296,490	33,583,320	2,798,610	27,955,800	2,329,650
22	40,301,760	3,358,480	34,227,960	2,852,330	28,526,160	2,377,180
23	40,970,880	3,414,240	34,798,440	2,899,870	29,096,160	2,424,680
24	41,640,240	3,470,020	35,442,960	2,953,580	29,641,680	2,470,140
25	42,384,000	3,532,000	36,037,680	3,003,140	30,236,520	2,519,710
26	43,078,200	3,589,850	36,632,640	3,052,720	30,781,920	2,565,160
27	43,722,840	3,643,570	37,153,320	3,096,110	31,253,160	2,604,430
28	44,392,080	3,699,340	37,723,320	3,143,610	31,798,560	2,649,880
29	45,011,880	3,750,990	38,343,120	3,195,260	32,319,000	2,693,250
30	45,705,960	3,808,830	38,888,640	3,240,720	32,864,400	2,738,700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20만원은 별도 지급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가. 대상 어린이집

1)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지원)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나. 지원기준

1) 원장 : 인건비 80%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또는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중에서 농어촌 지역 소재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원 11인 이상을 조건으로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도시 지역도 가능

※ 2016년 신규인가를 받은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현원 2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2) 보육교사 :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가)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나)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 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다) 방과후반 교사 : 2004년 이전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인건비의 50% 지원

(라)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보육료로 충당)

(마)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혼합반 운영시 낮은 연령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

3) 법인·단체 등(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함

○ 학교내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의 1/2 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 동일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출산 휴가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출산휴가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됨

(나)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사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으로 대체교사 채용시 참조

다. 지원시점(인건비 승인시설)

○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단, 신규·재지원시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가능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 :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 (특수교사수당 200,000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4대보험료 적용비율

- 국민연금 부담금 : 월보수액 × 9.0%/2
- 국민건강보험료 : 월보수액 × 6.12%/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보수액 × 6.12% × 6.55%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 × 0.9%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 0.7%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취사부 1명 지원

○ 보육교사 :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2)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음

마.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1) 평가인증발표일이 속한달의 익월부터 지원

2) 지원기준 :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3)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농어촌(법 제2조)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법 제33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준농어촌(시행령 제9조 ②항) :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3 장애아 보육 지원

가. 정의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나. 총괄

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396㎡까지 지원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인건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건비 지원 미승인 시설 : 장애아 1인당 기본보육료 402천원 지원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또는 138만원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 참조
○ 장애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 참조
–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438천원 지원
–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반별보육료(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의 '장애아동'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 정부지원단가(438천원)의 50%인 219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5) 장애아보육 내실화

○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별도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아보육지원 가능

○ 시·군·구에서는 장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아전담보육교사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배치 가능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장애아통합반은 반별 정원 외로 보육가능

예시 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장애아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장애아 종일반·통합반을 1개 이상 개설 원칙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없음(치료사, 취사부,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 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예 어린이집에 장애아 9명인 경우(누리장애아 5명, 일반장애아 4명)

① 반편성 :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② 반 운영 중 A반에 누리장애아(○) 1명 퇴소 후 일반장애아(△) 1명 입소한 경우

→ 시스템 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반 C(△,△,△)

* 혼합반은 한반만 편성 가능하므로 B반의 누리장애아 1명(○)을 A반으로 이동 후 입소하는 아동(△)을 B반에 배치

실제운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반 C(△,△,△)

○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 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예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하여야 함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교사 3인중 1명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함)
- 교사 3인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하되, 장애아 전담보육교사 대신 특수교사로도 배치가능
-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도 1:3이 원칙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초과보육 가능(단, 종일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배치기준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함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16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않은 만 5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 만 5세 장애아 2명 : 장애아전담교사 1명
– 만 5세 장애아 3명 : 장애아유아보육교사 1명
– 만 5세 장애아 4명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 만 5세 장애아 3명, 만 3세 장애아 3명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교사 2명
– 만 5세 장애아 6명, 만 3세 장애아 9명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만 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구 분	원 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지원조건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종일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하여 지원 (아동 3명당 1인)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시)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100%
수당(월·인)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 한해 20만원	20만원
현원감소 시 지원 기준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아동 현원이 2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 유지,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음
기타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의 지원기준대로 지원

※ 민간 또는 가정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지원조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장애아방과후 보육을 일일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지원하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에 한하여 지원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 (반편성)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아 종일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같은 반 편성 불가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5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없음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4) 지정절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정부지원 사전승인을 받아야 인건비 지원 가능)

5) 지정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④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경우
⑤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⑥ 법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⑦ 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⑧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⑨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6)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

○ 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나목 1)을 따르며,

○ 산정방법은 장애아를 12명 이상 정원에 포함하고, 총정원의 60% 이상을 장애아 정원으로 산정하여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가능

※장애아 최소 정원산정 예시) 어린이집 총면적 200㎡, 보육실면적 150㎡인 경우
(종전) 총 22명 → (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 비장애아 11명)
1안) 보육실기준 : (종전) 총 22명*6.6㎡ → (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6.6㎡, 비장애아 11명*2.64㎡)
2안) 총면적기준 : (종전) 총 25명*7.83㎡ → (변경) 총 31명(장애아 19명*7.83㎡, 비장애아 12명*4.29㎡)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종일반 기준임)

※통합시설의 장애아동(미취학, 취학 장애아 포함)은 시설정원의 20% 이내여야 함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종일반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지원기준)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보육교사 최초 인건비 지원은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시작하되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경우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2명일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음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38만원 지원

※ 정부지원시설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정부지원시설로서 장애통합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
- 단, 이 경우에도 장애아 종일반 지원이 3개월간 연속으로 중단되면 지정취소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사용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

4) 보육교사 배치 기준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 일반 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

예 장애아 3명 + 비장애아 20명

○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 일반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배치기준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함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16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않은 만 5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 만 5세 장애아 2명 : 장애아전담교사 1명
- 만 5세 장애아 3명 : 장애아유아보육교사 1명
- 만 5세 장애아 4명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 만 5세 장애아 3명, 만 3세 장애아 3명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명, 장애아전담교사 1명
- 만 5세 장애아 6명, 만 3세 장애아 9명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만 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6)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 수당 월 20만원을 별도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7) 지정절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8) 통합시설 지정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특별직무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장애아 3인당 장애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1인 및 장애아 전담교사 3인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로 배치)을 준수하는 시설

9) 지정취소

○ 취소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취소기준과 동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로 대체 지정할 수 있음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수·구청장	80%	438천원 (누리과정 438천원)
–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시장·군수·구청장	–	438천원 (누리과정 438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	80%(국공립·법인) 138만원(민간)	438천원 (누리과정 438천원)
3. 일반어린이집 :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지원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80% 80% 80% 30% 30%	418천원 368천원 304천원 220천원 220천원
민간보육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보육료상한액 〃 〃 〃 〃

※장애아 종일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미지정 시설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

4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가. 정의

○ 영아전담어린이집 :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나. 지원대상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다. 운영기준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 만 2세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16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2) 반편성 기준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

예 10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여야 하며, 유아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예 2세아 10명, 유아 5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5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하여야 함

–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12.31 현재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 (기존 총정원 40%범위까지 인정)

라. 인건비 등 지원

○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 분	원 장	보육교사
지원조건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0세반 :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1세반 :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 2세반 :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기타	-	• 유아를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민간 또는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마. 지정 취소

○ 시·도지사는 국공립 등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 법인(국공립)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지정취소사유 발생 시 다른 처분 적용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단, 영아전담어린이집지정시 대표자와 원장이 부부관계로, 한쪽의 사망으로 다른 한 쪽이 대표자와 원장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소재지 변경 및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단, 기존에 임대시설에서 영아전담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동일 행정동 내에서 자가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정원 증원은 불가)

- 이 경우에도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아전담에 적합한 시설 여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소재지변경 불가(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 불가)

  예 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한 경우

ⅰ) 건물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부채현황 및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를 포함한 총액이 자산의 50%를 넘는 경우

ⅱ) 가정어린이집인 경우는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한 경우 (제 2금융권포함)

ⅲ)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건물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초과한 경우 (제 2금융권포함)

※단,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정원 증원불가)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법인 영아전담시설의 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

– 신청에 의해 법인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보건복지부 사전승인). 단, 신축비 지원 시설은 개원 후 3년 이상 정상운영 이후에 전환 가능

※민간영아전담지정시설의 경우, 신청에 의해 일반시설로 전환가능

○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음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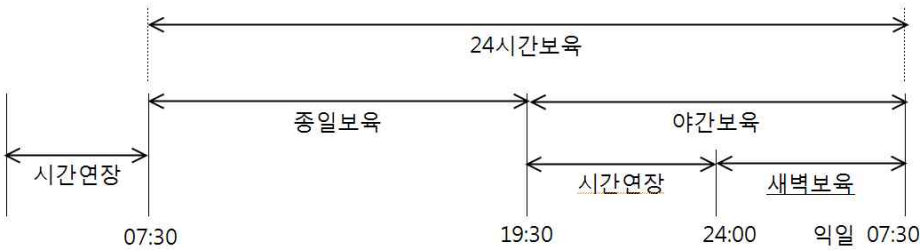

※ 시간연장형 보육 : 24시간보육(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새벽보육),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시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1) 정 의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 원 칙

○ 해당시설의 종일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시간연장 교사인건비(월급여 형태) 지원불가

○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시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4) 인건비 등 지원

※기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23.6만원 지원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할 경우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중 월 114만원 이상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 가능 (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지원교사 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시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시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시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시간연장반 별 월 41만원 지원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시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시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
※단시간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인정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시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시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시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5) 지원조건

○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 4대 보험 가입

②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③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6) 경력(자격·호봉) 인정

○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채용된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

7)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

예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 (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

– 주간(19:30이전)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주간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어서 19: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시간연장 보육 정원으로 간주

※ 시설 내 여유공간과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시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시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

○ 주간 보육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경우 15:30이전에 등원하여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한 아동은 주간 아동으로 보아 주간보육정원에 포함

– 주간 보육정원이 채워졌을 경우 원칙적으로 19:30이전에는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입소시킬 수 없으나, 조기 귀가 아동이 있고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에는 19:30이전에도 정원 외로 시간연장 아동 보육 가능(단, 주간보육료 수납 또는 지원은 불가)

8) 지정절차

○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9) 지정취소 및 재지정

○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나. 24시간 어린이집

1) 정의

○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보육서비스 개념정의

- 야간보육 : 야간(19:30~익일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 보육 :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

2) 원칙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

○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아동 입소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등록은 반드시 시·군·구에서 확인후 등록 승인하고, 주기적인 관리 실시

○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3) 지정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함

4)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

나) 지원조건 : 아래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23.6만원(월)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월 114만원 이상은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종일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무실시 등)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 수납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정부에서 차등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준함

5) 야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해 야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미취학 영유아)

– 시·군·구청장은 반기별로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6)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1월 이상 아동의 보호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

7)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주1회 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 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 및 24시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서식 Ⅸ-5-3>의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하에 24시간 보육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 및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과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8)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의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음

9)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 및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보육환경(수면실 등)과 급간식 제공여건 및 야간 보육 프로그램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후 야간 및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정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예산으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야간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다. 휴일 어린이집

1) 정 의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2) 정원 책정

○ 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

3)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 지원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 시설 당 휴일반 2개반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정절차

○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6 방과후 어린이집

가. 정 의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19:30분까지)

나.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 2004년도 3월 1일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중인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신규 지원 없음)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내지 16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함
  – 보육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방과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의 연계선상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20%까지 보육할 수 있음
  – 단,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다.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취소

○ 시·군·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②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③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라.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어린이집(방과후지정시설 제외)이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 최소 인원(5명) 이상 종일반 보육을 지속하여야 하고,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단, 아동 5명 이하에 한하여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 없이 방과후 보육 가능하도록 안내(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가 없더라도 방과후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함)

- 방과후 보육(일일 4시간 이상 상시재원 원칙)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단, 방과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농산어촌 등)에는 지자체 재량 하에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방과후 보육 가능

7 기본보육료 지원

* 적용시기 : 2016년 3월 이용현황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가.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특히,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여성농업인센터에 기본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다른 아동 없이 원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 : 원)

연령	0세	1세	2세	장애아
기본보육료(원)	383,000	185,000	121,000	402,000

라. 지원금 산정방식

○ (입·퇴소아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 (계속 재원 중인 아동) 월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 반편성별 지원기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 제외)

- 시·군·구는 반별 최대지급인원(ex,0세반 3명) 범위 내에서 기본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퇴소로 인해 일할 계산되는 경우에는 허용된 초과보육 아동을 포함하여 지급금액이 많은 아동 순으로, 반별 최대지급 금액(혼합반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
- 생성일 당시 유효한 반에 대하여만 기본보육료가 생성

반구분	교사대아동비율(초과반영)	최대지급인원(명)	기본보육료(원)
0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383,000
0, 1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383,000 185,000
1세반	1:5(초과보육시 1:7)	5	185,000
1, 2세반	1:5(초과보육시 1:7)	5	185,000 121,000
2세반	1:7(초과보육시 1:9)	7	121,000
2, 3세반	1:7(초과보육시 1:9)	7	121,000 0
장애아반	1:3	3	402,000
장애아 방과후반	1:3	3	343,000

바. 양육수당과의 중복지원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본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

※ 단,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 변경 신청시 기본보육료 지원 기준▐

구 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본보육료
보육료→양육수당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 신청일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한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퇴소아동 기본보육료 생성기준 적용)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	• 해당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변경 신청한 월에 대하여 어린이집 이용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퇴소아동 기본보육료 생성기준 적용)
양육수당→보육료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 신청일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 이용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입소아동 기본보육료 생성기준 적용)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변경 신청한 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변경 신청일 이후에 어린이집 이용 일수만큼 기본보육료 지원(입소아동 기본보육료 생성기준 적용)

※서비스 변경 신청(양육수당→보육료)을 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보육료는 지원하지 않음

사. 지원절차

1) 이용현황 확정

○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

○ 어린이집은 회계보고 실시, 교사대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 기본보육료 생성시점(1일 0시)에 지원요건이 준수되어야 기본 보육료 지원금이 생성됨에 유의할 것

2) 지원금 생성

○ (생성기준)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기본보육료 지원금 생성

– 어린이집 전체아동(입퇴소아동 포함)에 대한 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 보육서비스 등 이용현황을 확정

※지원금 생성시점에 휴지, 폐지된 어린이집도 전월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생성 지급가능
※지원금 생성은 기준은 '라. 지원금 산정방식' 참조

○ (유의사항) 초과보육 허용 범위 내의 초과보육아동이 있는 반은 기본보육료 지급 금액이 많은 순서로 생성하고 지급금액이 적은 아동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기본보육료 생성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신청기간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어린이집 신청 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위반을 해소한 경우 기본보육료를 재생성**하여 신청하면 신청 당월 지급 가능(기 신청한 경우 재생성 불가)

○ (지원금 소급 신청)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이용현황 미확정 및 미신**청으로 신청 당월에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

○ (승인 또는 반려) 시·군·구는 5일까지(어린이집 신청기간 3일 포함)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승인 또는 반려

○ (재신청) 시군구에서 **반려된 기본보육료 신청 건**에 대해 당월 **시군구 확인 기간 내 어린이집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승인 시 당월 지급가능

○ (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 승인 후 3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기본보육료를 지급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기본보육료 처리주체별 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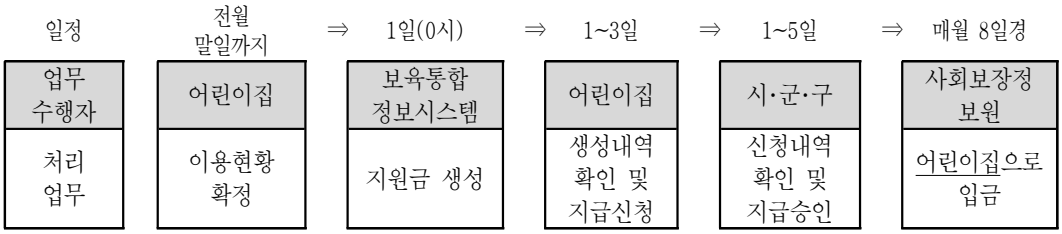

※ 지급일정은 월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 지원중단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달부터 지원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달부터 지원
- 단,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1일 0시)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원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교사대 아동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익월 신청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재생성 후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가능

※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익월 신청기간 내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지원중단월의 기본보육료를 소급 지원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시·군·구는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원

※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및 폐원이 결정된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행정지원시스템의 [지도점검 관리]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일자를 매월말일 이전에 처분확정(입력)하여야 기본보육료가 자동 산출되므로, 행정처분 일자 등 시스템 입력관리 철저

예시 4월 5~10일 운영정지(반드시 시스템 입력)될 경우, 4월에 생성된 기본보육료는 모두 지급하고, 5월에 생성된 기본보육료는 1~4일, 11~말일까지 지급

자. 환수

○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환수대상)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받은 기간의 기본보육료

– (환수금액)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기본보육료=총 아동 수×보육료 단가) 중 일부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만 환수

※ 단, 지원요건 ④(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에 해당함에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운영정지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지원된 보조금(기본보육료) 전부를 운영일 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수

8 차량운영비 지원

가. 대상시설

○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함

나. 지원규모

○ 개소당 연 240만원(월20만원)을 지원

다. 지원방법 : 반기별로 분할 지원

라. 지원절차

○ 지원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운영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 버스신고필증을 별도 보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의 적정 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된 차량운영비를 전액 환수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등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9 교재·교구비 지원

가. 대상시설

○ 2015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기준

○ 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시점의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

다. 구입대상품목

○ 영유아 보육(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 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

※표준보육프로그램 교재 구입 지원 가능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 제외

라. 지원절차

○ 각 시설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재 교구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재교구 구입영수증 등 교재교구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시 교재교구비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재교구비 지원액을 전액 환수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교재교구비 연중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음(12월에 일괄신청 및 일괄지원 지양)

※재원아동 중 0~2세 보육아동 수(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여부 포함)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가. 사업개요

1) 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및 어린이집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2) 주요내용

○ 시설 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부지확보를 통한 시설 신축방안 이외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부채납,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등 다양한 확충방안 지속 추진

○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 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단,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개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3) 흐름도

○ 사업계획서 제출(전년 3월) → 현지점검(전년 5~6월) → 가내시 통보(전년 10월)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전년 12월) → 국고보조금 신청(당해연도) → 국고보조금 교부(당해연도) → 사업집행

○ 그 밖에 사업 포기등으로 예산 여력이 생길 경우 추가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구체적인 국공립신축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시 반영

○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단,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은 정원 증가없이 이전 또는 대체신축비 지원 가능

(2) 지원규모

○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최대 지원액 : 251,46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고려사항

○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과 시·군·구 읍·면·동 청사 신축·증개축 시 어린이집을 복합 설치하도록 노력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 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안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

○ 장애아보육은 취약보육임을 감안하여 국공립으로 장애전문시설을 적극 설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1)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거나 기부채납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거나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신축비 지원 가능(예 : 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

(2) 지원내용

○ 건물매입비 및 설치비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251,460천원)까지 지원 가능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고려사항

○ 농어촌 등 열악한 민간시설을 우선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

○ 민간시설 매입시 국민연금기금('94~'97년)을 받아 설립한 어린이집을 우선 검토

○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어린이집 분포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축보다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전환을 적극 활용토록 노력

(다)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1) 지원대상

○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2) 지원규모

○ 시설 유형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전문가의 공사견적가 기준으로 지원

○ 최대지원액 : 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고려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

○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을 우선함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또는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법 제24조 제2항 단서 3호)

○ 시·군·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의 규정이 개별공동 주택관리규약에 반영되어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 :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시·군·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협의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세대주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라)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 '16년 중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 경우 사업비와 동시 신청 가능

※신축의 경우 착공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지원단가(국비, 지방비 포함)

○ 신축(전환 등 포함) : 10,000천원/개소

○ 공동주택 : 30,000천원/개소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고려사항

○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CCTV, 통학차량안전용품 등을 구매하며, 차량구입비, 시설 공사비로 사용 불가

○ 민간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존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이용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마)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아전문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후보자로 선정되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에 부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 후 예산교부 신청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함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 후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점검 후 최종 결정

○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수요 및 장애아전문(통합)시설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추천하되, 전문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

– 단, 최근 3년이내에 전문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특별한 사정 : 갑작스런 장애아 보육수요 증가, 기존 장애아전문시설 폐·휴지 등

(2) 지원규모

○ 개소당 396㎡까지 지원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지원한도액 : 251,46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고려사항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

※어린이집의 설치지역이 보호자·아동(개별) 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에서 제외

○ 시·도에서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국공립장애아전문시설 설치 절차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절차와 동일

❒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시설 설치 절차

-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사업자 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고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 경쟁률 통하여 사업자 선정
    * 기존 어린이집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시·군·구의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부지 변경은 불가
  -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 조사결과 보고(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사업계획서, 현장 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보건복지부)
- 확정내시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한다.

-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 기존 어린이집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보육교직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2)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 증·개축비

(1)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3) 지원규모 및 단가

○ 개소당 132㎡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 지원단가 : 751,440원/㎡

※국비최대 지원액 : 49,595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4) 고려사항

○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지원대상시설 설치 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최근3년이내 : 2013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 시설 증·개축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규정 준수 여부와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 기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부록 참고)

○ 증개축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나) 시설 개·보수비

(1) 지원대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지원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 점검시"보수"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 석면안전진단 결과"석면함유 건축물"로 판정을 받은 경우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최근3년이내 : 2013년 이후(포함) 지원 어린이집

○ 개보수 대상어린이집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지원규모 및 단가

○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 공무원 확인 후 결정

○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다) 장비비

(1) 지원대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장비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 장비 노후화 및 보육아동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3) 장비내용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트 등), 실내공기질 개선물품(공기청정기 등), 기타(손씻기 시설 등)

○ 통학차량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어린이집 CCTV설치비 등 가능

(4) 고려사항

○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06년도 표준보육행정전산망 및 급식실태 개선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

3) 장애아시설 기능보강

(가) 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08.4.11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어린이집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도모

(나) 시설 개·보수

(1)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비, 장애아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최근3년이내 : 2013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2)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3) 고려사항

○ 개·보수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및 동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해 지원

▌영유아어린이집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편의시설 /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장애인 주차장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 출입구	내부 복도	내부계단,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등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아동관련시설 (영유아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부록 참고) 참조

(다) 장비비

(1)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우선 지원

※ 동일 조건일 경우 장애아 현원이 많은 경우 우선 지원

(2) 지원단가

○ 3,000천원~4,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장애아 현원	
	20인 미만	20인 이상
지원단가	3,000	4,000

(3) 장비내용

○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 이동·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조기구
- 어린이집 내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모든 공간에서 이동·접근에 필요한 보조기구 및 이동수단 등
- 학습참여 지원기구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 등
- 의사소통 지원기구 :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등
- 기타 원활한 학습 수행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측정검사도구 및 치료 지도자료, 안전용품 등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다. 사업수행 절차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서식 Ⅸ-6, 8>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보육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16년 상반기 중에 신청

- 보건복지부는 확정 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체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 내시 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기재

○ 시설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

2) 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 <서식 Ⅸ-6> ❒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 : <서식 Ⅸ-7>
시설 신축·리모델링, 매입 및 증개축비	2016. 6월말까지	❒ 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증개축 계획서 <서식 Ⅸ-8, 서식 Ⅸ-10> ① 시설 신축 - 어린이집 신축 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Ⅸ-9, 서식 Ⅸ-9>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시·도 보관)<서식 Ⅸ-11> ② 민간시설 및 기존건물 매입 - 어린이집 매입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Ⅸ-8, 서식 Ⅸ-9> -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된 것) - 리모델링 필요시 기술직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③ 공동주택 및 기존건물 리모델링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Ⅸ-8, 서식 Ⅸ-9>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④ 증개축 - 증개축 사업 계획서<서식 Ⅸ-10>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시·도 보관)<서식 Ⅸ-11>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
기자재구입비	2016.12월까지	❒ 기자재 구입 계획서<서식 Ⅸ-14> ① 신축시 - 공사계약서 또는 감리원·공사감독관 공정확인서 - 공사현장 사진 1부. ②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시 -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 사업비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단, 기존 기자재를 매입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시설 개·보수비	2016. 6월말까지	○ 어린이집 개·보수 계획서 <서식 Ⅸ-12>
장비비 지원	2016. 6월말까지	○ 어린이집 장비비 계획서<서식 Ⅸ-13>

3)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Ⅸ-15>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국고보조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 사업추진방법(예 : 신축 → 민간매입, 기부채납, 리모델링 등),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정원, 면적 등), 비용분담내용 등
- 사업추진방법(예 : 신축 → 민간매입), 어린이집명, 소재지, 비용분담내용 등

※ 시·도지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 동일 시·군·구 내에서의 사업부지 변경
- 지자체부담조정에 따른 사업비변경

4) 건축설계 자문실시

○ 국공립시설과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건축가협회 보육분과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노력

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정산

1) 수행실적 보고

○ 국고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을 매반기마다(6월, 12월)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상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 국공립시설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증개축, (장애아시설)개보수, (장애아시설)장비비

2) 정산

○ 장애아전문신축 사업후보자 및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대상 시설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된 경우 사업완료 후 정산시에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예시 ① 장애아전문 사업후보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내역
- 총사업비(533,200천원) : 국비(216,600천원), 지방비(216,600천원), 자부담(100,000천원)
- 분담비율 : 국비(40.7%), 지방비(40.7%), 자부담(18.6%)

②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 총사업비 : 490,000천원
- 총사업비 감소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 국 비 : 490,000천원 × 40.7%=199,430천원
  - 지방비 : 490,000천원 × 40.7%=199,430천원
  - 자부담 : 490,000천원 × 18.6%=91,140천원
- 국비집행반납처리 : 17,170천원

3) 선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27호(2009. 3.13.)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선금지급이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급은 선금의무지급률에 따른 선금과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 의무적 선금율

공사금액	비 율
100억원 이상	30%
100억원~20억원	40%
20억원 미만	50%

※ 선금지급이 가능한 경우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어린이집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1) 대 상

○ 사회복지·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어린이집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 시설설치비를 반납

○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교재교구를 구입한 시설의 폐지시 교재교구를 반납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받음

* 단, CCTV의 경우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기간에 비례하여 반납받음

○ 교재교구가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함

참고법령(보육사업 안내 부록 참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09.4.11부터 : 장애아전문시설
    - '11.4.11부터 : 100인 이상 국공립·법인어린이집
    - '13.4.11부터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별표1의 대상시설(영유아어린이집 포함) 중 '09.4.11이후 신축·증축·개축 시설물 대상
    - 어린이집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98.4.11 시행) 기 적용 대상
-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 '11년부터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 적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PM10(ug/㎥) 100 이하, CO2(ppm) 1,000 이하, HCHO(ug/㎥) 800 이하, CO(ppm) 10 이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함
  - 이 법 시행(2008.1.27)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11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가. 추진배경

○ 이용할 어린이집이 없으나 보육수요가 존재하는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 사업명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시·군)
  – 지자체 농정부서에서 주관, 지자체 보육부서에서 협조
○ 사업담당 :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

다.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정의

○ 농어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마.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함
○ 분원시설로 운영할 경우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분원"으로 하여야 함

◇ 분원시설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 본원시설 : 분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국공립어린이집

바. 지원보조

○ 시설비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 운영비 : 국비 100% 지원

사. 지원자격 및 요건

○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군
  –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은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아.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로 전환시 폐원절차 없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사업 승인시 전환 가능

자. 배치기준

○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해 설치 지원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설치가능

차. 시설의 위탁운영 등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 운영방법

- 보육교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을 분원형태로 지정한 경우, 별도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함
-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준을 준용함

카. 설치 및 지원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 조건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함

2)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3호 규정<개정 2013.12.5>에 의함

3)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 매 분기말 익월 1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4)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지원 단가 :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① 3~15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 이상 15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81,725천원 (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16~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85.8㎡이내(16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108,966천원 (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운영비 지원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 10만원/월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 : 10만원/월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 교재·교구비(1개소)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500천원~1,000천원/1회

※신청월 상시 영유아 수가 3~5명일때는 500천원, 6~10명일때는 700천원, 11~15명일때는 1,000천원을 지원

- 프로그램개발비(1개소) : 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냉·난방비(1개소) : 연 1,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200천원/월 이내 원칙)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체 1,200천원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타. 어린이집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1) 어린이집 운영규정

○ 어린이집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2) 보육대상

○ 만 0세~만 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3) 어린이집의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지역에 한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반편성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은 최저연령 기준에 따름

*도서·벽지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지역에 한해 전체 보육아동 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 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도서·벽지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

○ 기타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Ⅱ.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용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16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를 적용할 수 있음

(4) 입소순위

○ 보육사업안내의 입소우선순위를 적용함

(5) 기타 보육운영시간, 보육교사의 배치 및 근무시간 등 운영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및 201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함

(6)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원장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보육정원 20명 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분원의 경우, 본원 원장은 분원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분원으로 지정된 경우, 본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 운영을 지원하는 '분원운영지원교사'로 지정할 수 있음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함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사업대상자는 10인 이하인 경우에도 직접 운영 또는 분원 운영 모두 가능

◇ 본원 원장(국공립어린이집)의 책임

-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의 임면
- 안전 및 위생관리 감독
- 취사부 및 보육보조인력의 임면
- 예·결산 회계

◇ 분원 운영지원교사의 자격 및 업무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다음의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분원 운영지원교사'는 분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일과운영 계획
  - 보육실 환경 구성
  - 조리실 관리
  - 교재교구 선정
  - 부모상담
  - 급간식 식단 운영
  -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

(7)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 보육료에 관한 사항은 201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

12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가. 추진배경

○ 보육시설이 없거나 접근성이 부족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놀이교실을 지원하여 탄력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 사업명 :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시·군)
  - 지자체 농정부서에서 주관, 지자체 보육부서에서 협조
○ 사업담당 :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

다.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라. 정의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이감·도서 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마. 지원보조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기자재 구입비 등) : 152백만원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바. 지원자격 및 요건

○ 이동식놀이교실 운영을 하고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도 및 시·군

사. 운영기준

1) 사업대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 영유아 및 학부모

2) 운영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

○ 거점지역을 설정하여 단체 보육 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을 방문함

○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방문함

○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프로그램 및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활용함

3) 종사자 배치 및 근무시간 등

○ 놀이교실 운영은 보육 전문 인력 1인 이상과 지원인력 1인 이상으로 운영함

○ 놀이교실 종사자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전문인력은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며 놀이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문제를 상담할 수 있음

4) 사업내용

○ 놀이감 및 도서 대여

○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5) 운영현황(사업평가 등) 보고

○ 시·도지사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사항, 놀이기구 구입현황(가격, 일자, 사진, 관리사항 등), 예산집행 현황, 특기사항 등 운영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함(사업종료 2개월 내)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16. 2월까지)

아. 기 타

○ 놀이감 등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유지·보수 하여야 함

○ 놀이교실 운행 및 교육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 놀이차량 운영 책임자는 놀이교실 이용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놀이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응급상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놀이차량 종사자는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 놀이차량에는 일일 차량안전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함

○ 이동식놀이교실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취약한 보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 또는 인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이관·활용도 가능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가. 목적

○ 농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6년부터 이관

나. 지원내용

○ 농촌 등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개인별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다. 지원대상

○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원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시 지급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월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육교사 보조

라. 지급 방식

○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매월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원장은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시·군·구에서는 익월 7일까지 집행하되, 12월분은 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신청(신청월 포함 3개월)
-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마. 지원 형태

○ 지원기준 :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국고 40~60%, 지방비 40~60%

※ 농어촌 등의 범위(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2537호, 2015. 7. 3)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어촌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한 준농어촌
   *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촌지역 포함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20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6.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월 15일 :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연수미이수의 사유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가능. 신청자(원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 철저

3)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 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급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기능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지급 상한제 적용 제외)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1) 지원내용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7만 5천원 지원('16.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 :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3)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입금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 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가. 지원 내용

○ 담임교사가 연가(주중 5일/인)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파견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사에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이월불가)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 지원

•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기간 계산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보육교사가 5인 이하인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다. 지원 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2주 이내) 참석, 결혼 등 연가(주중 1~5일),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등 보육 수요 발생)발생시 지원

○ 연가,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 이내(최대 2주)

• 보수교육 참석시 : 주중 1~5일 이내(최대 2주)

• 연가 사용시 : 주중 1~5일 이내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비 고
상시	1 (교육)	보수(직무·승급) 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주중 1일~5일 (최대 2주)	사후 증빙(영수증)자료
	2 (연가)	연가 (결혼 우선 지원)	주중 1일~5일	사전 결혼증빙자료
긴급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최우선 사유	수시 접수

라.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 신청하되, 보수교육 사유,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시 상시, 유선·Fax 등을 통해 신청 가능

파견시기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말	2월	4월	6월	8월	10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어린이집 확정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 및 대체교사 파견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시도별 보수교육 운영상황 등을 고려,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고정 고용보다는 탄력적 채용 운영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 보육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근무) 주 5일 근무

※채용된 대체교사는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대체교사 파견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가능

– (지원단가) 월 1,714천원(교통비 10만원, 퇴직적립금 8만원,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16. 1월부터 적용)

※대체교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월급제가 아닌 교사채용 가능

※시·도별 퇴직적립금 적립 규모에 따라 추가로 퇴직적립금 적립이 필요한 시·도에서는 예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퇴직적립금 추가 지원(적립) 가능

※2013년 3월 이후 대체교사를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이 가능한 지역) 어린이집으로 파견함에 따라 월10만원을 넘는 교통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초과지급(월10만원 한도 내) 가능

○ 대체교사 사업 운영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비 집행

–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3% 내외에서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대체교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관리자에 대해 수당 지급 가능

바. 유의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가. 사업 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 이상인 어린이집

*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 신청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경우 정원 충족율 80% 미만도 선정 가능
(이 경우에도 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필수)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 현원 9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 제외 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6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6년 사업기간 중 지속 지원 가능

나.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 월 784천원(4시간 기준)* 지급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

– 보조교사는 담임교사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법령 및 사업취지를 고려, 특정반 담임교사로서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불가

– 영아반 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

다. (사업기간)'16년 1월 ~ 12월

라. 지원 절차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지원 조건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어린이집은 지원조건이 중복되어도 개소당 보조교사 1명 지원
*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반수(아동수), 평가인증유지 등에 미달하더라도 '16년도 사업기간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실시

–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 시·군·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 준수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예) 1. 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784,000원 × 21일/31일= 531,097원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군·구별 지급기간을 조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마.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등 사업을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지원조건 내 우선순위 마련하여 실시 가능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시)
- 보조교사가 특정 반 담임교사나 원장겸 보육교사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 인건비 상한 연령(60세),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17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가. 정 의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 제외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다. 선정 요건

○ 참여 기본요건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산정기간은 각 시·도별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가능함.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그 외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2016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참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라. 운영 기준

1)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2)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 이상 유지

- 공공형으로 운영 중에 3차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 85점이상 유지 필요

3)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4)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적용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인하하는 대신 필요경비를 인상하여 추가로 수납할 수 없음

5)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적용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선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월 급여를 낮출 수 없음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표는 306쪽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이상을 지급

※월 지급액(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이상):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
4대 보험료 중 교사 본인부담분 포함(사업자 부담분은 교사급여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부담)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정은 월 지급액 기준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 국공립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하되, 어린이집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3월부터 당해연도 지급기준 적용

6)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함

○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평일 19:30분까지 운영하여야 함

– 지역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하여서는 안 됨

7)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필수 운영

8)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다만,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 종료 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함

○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9)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 의무 참여

10)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마. 품질 관리

1) 필수교육 및 원장연수(구. 자율공부모임) 참여(한국보육진흥원 주관)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 과정·준수 요건 등에 대한 필수교육 개최

○ 각 권역 및 모임별로 공공형 어린이집 자율공부모임(특강 및 소그룹 워크숍) 실시

2) 재무회계컨설팅

○ 예·결산 편성 및 진행방법, 재무회계 관련 증빙서류 관리 및 문서작성 등

3) 선정요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바. 지원 내용

1) 운영비 지원 : 2016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참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2)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사.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취소권자 : 시·도지사

○ 선정 취소 사유

- 평가인증 취소 시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받은 결과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기준점수) 2차 지표 : 90점, 3차 지표 시범사업 : 85점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시·도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 단체, 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공공형 유지 가능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평가인증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공공형 유지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1호부터 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에 따라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됨
-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보육료 부정유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구 운영비(정원기준)를 지급받는 어린이집 중 최근 6개월 정원충족률이 80%(농어촌 50%)에 미달한 경우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기준보다 낮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으나, 동일한 사람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사후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시정조치 되지 않았을 경우
  - 선정 확정 이후, 건물 소유 및 이용여부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미만일 경우
-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과태료는 제외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 선정 취소 절차 : 시·도에서 선정 취소

– 시·군·구는 선정 후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 시·군·구는 행정처분(보조금반환명령, 운영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하며, 시도는 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취소 사유를 7일 이내에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진행

①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등 실시 : 어린이집의 의견서 제출에 충분한 기간을 둠

②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 실시 : 어린이집 제출 의견서 검토 후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처분 결정

–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 취소 통보를 하고, 시·도(시·군·구)는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 조치 함

– 시·도는 선정 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는 선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시·도에 서면보고

○ 선정 취소일 : 처분 확정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선정취소 사유 발생
⇩		
시·군·구	선정취소발생 확인 ·보고	• 선정취소 사유 확인 후 시·도에 서면 보고
⇩		
시·도	취소 사유 확인 및 행정처분	•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행정처분 결정 • 시·군·구를 통하여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통보 –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조치 • 선정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면 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	지정서 및 현판 회수·폐기	• 시·도의 선정 취소 후 결정사항을 어린이집에 통보 • 지정서, 현판 회수 폐기 서면 보고 → 시·도지사

○ 선정 취소된 경우의 보조금 지급

– 선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비를 환수

○ 선정 취소 사후처리

– 선정 취소처분 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함

– 선정이 취소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2년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통상적인 행정구제절차 이행 가능

[행정사항]

• 소송 중 집행정지 인용, 소송 승소 등으로 인해 선정취소 후 직권복원 시 익월부터 운영비 지급

– 해당월에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되 익월부터는 공공형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취하원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시·도에 선정취하원을 제출, 시·도는 취하원 접수 및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취소 통보

– 선정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18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가. 지원내용

○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해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 일부 지원

나.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2016 보육사업안내 *p.310* 참고)

다. 지원기준

○ 어린이집 규모(정원) 및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

※정원충족률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익월 지원

– 지원단가

(단위 : 천원/월)

정원 구분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상
60%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라.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지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비의 적정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387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392
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398
4. 상담전문요원 배치 ····· 400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 401

육아종합지원센터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가. 정의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나.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 지역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종 전	영유아보육법 개정('13.12.5~)*
명칭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어린이집 지원)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종전과 같음 보육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일시보육서비스 등

다. 명칭

○ (국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국문)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시·도명 시·군·구명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예) 서울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Seoul Gangdong-gu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라.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마.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 재정 여건 등으로 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인근 5개 이내 시·군·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센터의 위치, 운영비용 분담비율 및 기타 운영세부기준 등은 시·군·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가 교통 여건 등 접근성, 보육수요자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에 의해 결정

바. 시설 설치기준

○ 입지조건

- 이용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부지에 설치하여야 함
-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 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단, 설치비 국고보조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타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 등과 별도로 설치함

○ 구조 및 설비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시행령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 및 시설 예시▐

<table>
<tr><th>유 형
내 용</th><th>가정양육 지원</th><th>어린이집 지원</th><th>기관운영지원</th></tr>
<tr><td rowspan="2">실 내</td><td>수유실, 육아정보 나눔터, 실내 놀이터, 일시보육실, 장난감 대여실 등</td><td>어린이집, 교구·교재 대여실, 보육교직원 상담실 등</td><td rowspan="2">사무실, 자료실(비품보관실), 양호실, 창고, 업무공간,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td></tr>
<tr><td colspan="2">안내데스크, 프로그램 놀이실, 다목적용 강당, 교육실, 도서관, 상담실, 치료실, 휴식공간, 세면실, 화장실 등</td></tr>
<tr><td>실 외</td><td colspan="3">주차장, 놀이터, 다용도 체험놀이터, 옥상 등</td></tr>
</table>

※지역의 이용수요 및 특성, 예산규모 등에 따라 설치공간을 조절할 수 있음

- 건물구조, 일시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하고, 「건축법」, 「소방방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사. 직원 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근이 원칙(시행령 제14조)

※부득이할 경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비상근(겸직) 가능. 이 경우, 반드시 근무시간에 따라 원 재직 기관과 급여관련 사항을 합의하여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에 따른 다툼이나 감사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비상근(겸직)인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근무경력은 근무기간의 5할만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10인 이상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5인 이상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4인 이상

※국비 운영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소 상근 직원수에 미달할 경우 평가 등을 거쳐 운영비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보육돌봄사업(대체교사 인건비) 국고보조로 채용한 대체교사인력은 최소 상근 직원의 수에서 제외함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팀(과)제로 운영할 수 있고, 팀장(과장) 직책을 둘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직원의 센터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업무 경력에 따름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국고보조어린이집 원장에, 보육전문요원은 국고보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준하여 호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경력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산원, 행정원 등의 관련업무경력은 공무원 8급 호봉산정 기준을 준용함

※전산원, 행정원의 경우 관련업무경력은 인정하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2">자격요건</th></tr>
<tr><td colspan="3">센터장</td><td colspan="2">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 rowspan="15">사업 전담 인력</td><td rowspan="3">보육전문 요원</td><td rowspan="2">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td><td>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td></tr>
<tr><td>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td></tr>
<tr><td colspan="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상담전문 요원</td><td colspan="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이상, 상담, 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전산원</td><td colspan="2">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전산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td></tr>
<tr><td>영양사</td><td colspan="2">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영양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간호사</td><td colspan="2">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간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 rowspan="3">특수교사 (치료사)</td><td colspan="2">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td></tr>
<tr><td colspan="2">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td></tr>
<tr><td colspan="2">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td></tr>
<tr><td>컨설턴트</td><td colspan="2">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써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td></tr>
<tr><td>행정원</td><td colspan="2">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td></tr>
<tr><td rowspan="2">운영요원</td><td colspan="2">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td></tr>
<tr><td colspan="2">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td></tr>
</table>

※구법('05.1.30. 이전) 또는"2003~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개정법('05.1.30.) 또는"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시행이후 퇴직한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재취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개정법('05.1.30.) 또는"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개정 영유아보육법('05.1.30.)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시행당시 종전 규정 등으로 계속 근무한 때에는 개정법 또는"2005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으로 봄. 전산원은 2014년 이후 채용자에 한해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운영요원은 2016년 이후 채용자에 한해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함

※'보육관련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2016 보육사업안내" Ⅲ. 보육 교직원 자격에 제시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서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함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 기본방향

○ 국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법 제51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2)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받아 지도·감독하여야 함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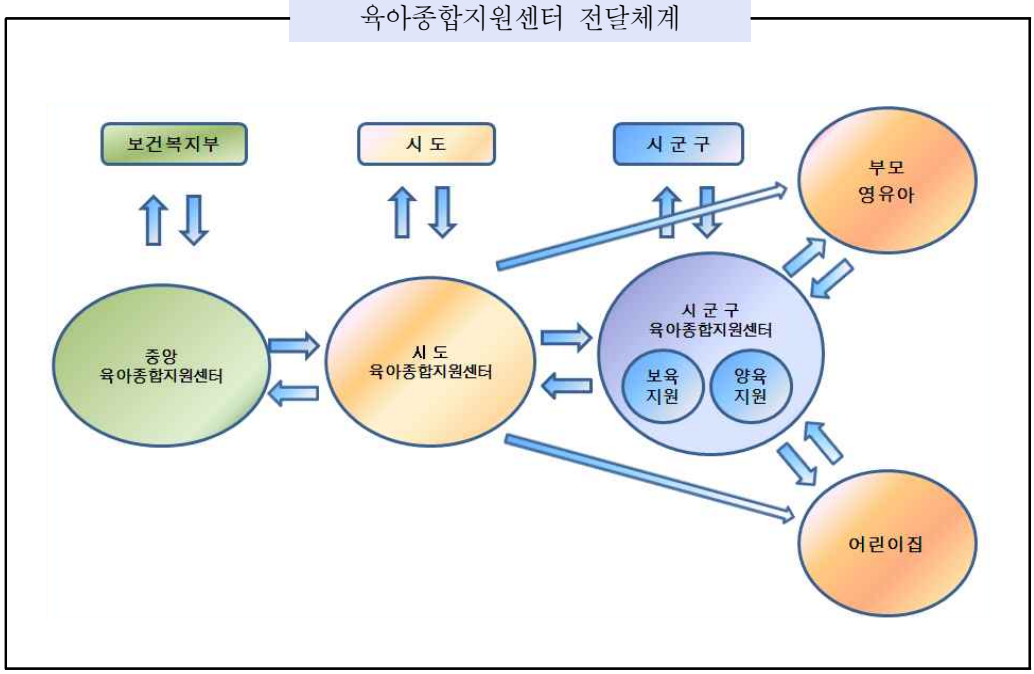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

- 전국 단위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DB구축 및 제공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강사 인력 풀 관리
- 전국공통사업 매뉴얼·자료 제작 등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 통합홈페이지의 운영, 원격교육 등 온라인 서비스 수행 및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상담·관리)을 위한 정보 구축,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지역의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의 개발·보급
-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현황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예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특수사업 매뉴얼 개발, 자료제작 등 지자체 특수사업 총괄·지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 시·군·구 센터 지원 •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사각지대 지원 •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 간 협의체 구성 및 관리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 제공 • 영유아 보호자와의 연계 등 가정양육 지원서비스 제공 • 다른 육아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 이용자의 욕구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분	공통사업	자체사업
어린이집 지원	•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어린이집 설치·운영·이용 등에 관한 상담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설치운영, 평가인증, 보육과정, 재무회계) •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 •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대한 교육 • 열린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정 양육 지원	• 부모에 대한 상담 • 부모에 대한 교육 • 양육관련 프로그램·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 • 영유아 부모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 • 영유아 부모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	•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제공 • 부모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 공간 제공 • 그밖에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 기타 사업	•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의 및 제공 • 보육프로그램 및 육아 콘텐츠 등 제공 •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	•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 관련 홍보 •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연계사업 •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 지자체 특수사업 등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 수납 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육과정컨설팅(교사 : +보육과정컨설팅)에 필요한 소모임 등 지원 비용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함

다. 업무 위탁(시행규칙 제39조의 2)

○ 업무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운영위탁기관 대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업무위탁시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기타 수탁내용 및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선정 심사 시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 관계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함

○ 업무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업무실적 등 평가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활용 가능

○ 신청서류(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

○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별도의 센터 운영관련 약정서를 체결

○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직원 임면
-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
-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위탁의 취소
-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수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라.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름

○ 또한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예·결산 내역,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보고

※매년 초에는 전년도 사업 및 결산내역서, 당해연도의 연간 사업 및 예산(안)을 제출

마. 직원 임면 · 관리

○ 각급 센터 직원기준 수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채용구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 사진(반명함판)

○ 직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보수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 근무시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따름

바. 회계 및 물품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기부금, 후원금 등은 목적 외 사용 및 임의 사용 금지

○ 예산집행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여 모든 물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 관리

사. 장부비치 및 관리

○ 관련 장부

부책(장부)명	보관·비치기간	비 고
시설 설치 및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센터의 재산관련 기록부	영구	
센터장 및 직원 인사기록부	준영구	인사기록부 서식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현금 및 물품출납부와 관련 증빙서류	5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서식 준용
직원채용 관련서류	5년	
센터 운영일지 및 관련서류	3년	
관련자료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수발철	3년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자료철	3년	

○ 관리방법 등

- 관련장부는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별도 보관
- 센터의 재산관련 서류, 직원 인사기록부 등은 특별관리

※ 센터 직원은 공무상 지득한 비밀엄수의 의무 준수

아. 센터운영규정

○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가. 운영비 국고 보조 지원기준

○ 중앙센터 : 1,100백만원(전액 국비지원)

○ 시·도센터 : 평균 31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 '14년부터 운영비 국고보조는 정부(보건복지부)의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내역

○ 지원대상

– 인건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등),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등

○ 센터장 인건비 지원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기준을 준용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공무원이 아닐 경우, 사업 규모, 종사자 수, 센터장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급~라급' 기준을 준용,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연봉(봉급연액)은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며, 그 외 월정직책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자금 지원을 추가 지급함.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준용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연봉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 급	–	54,343
나 급	67,561	45,017
다 급	55,216	37,217
라 급	48,442	34,554

○ 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기본급) 일반직 공무원 8급 기본급 준용

· (수당)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의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등),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 학자금 지원(중고생 일반 중등학교 기준)을 적용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급. 팀장의 경우 월정직책급 지급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기본급 및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함

※운영요원의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책정할 수 있음

○ 지급절차

–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장(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시에도 별도 승인 후 집행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승인 신청 : 변경 승인 1월전까지

다.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등

○ 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센터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함

○ 예산의 수입·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집행

라.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4 상담전문요원 배치

가. 개요

○ **(사업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사들의 심리적·정서적 고충 상담과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 수행

나. 상담전문요원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심리분야)**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다. (업무 수행 체계)

– 중앙센터 : 매뉴얼 개발, 교육, 상담관리 등

– 시·도 센터 : 상담운영, 교육, 사례관리 및 시·군·구 센터 지원

라. 업무 내용

○ (사업기간) '16. 1월 ~ 12월

<상담 전문요원 업무수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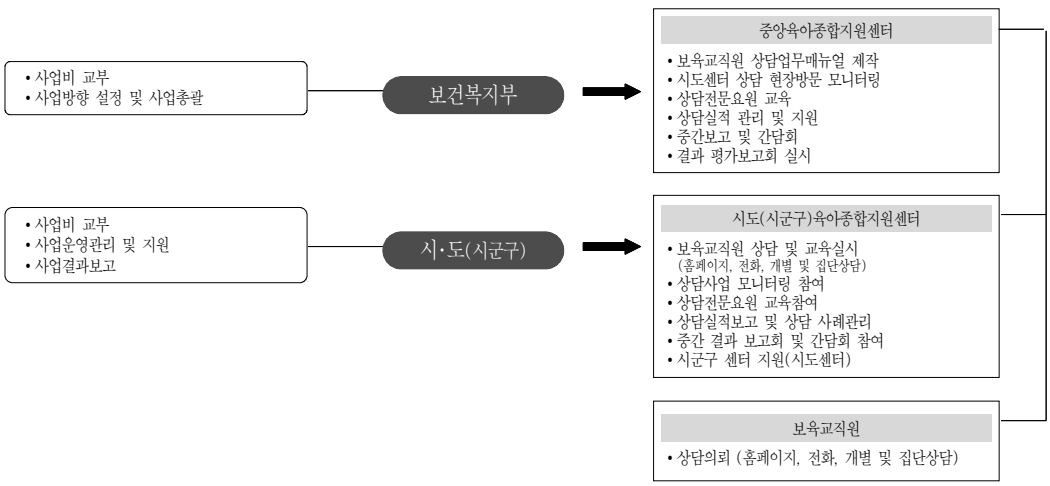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가. 지원규모 : 개소당 국비 10억원 한도(국비 50%, 지방비 50%)

○ '15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시 건축비 : 1,270천원/㎡

※신축시 건축비는 선정 당시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된 신축시 건축비를 따름

○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 매입 건물의 면적에 따라 신축시 지원 단가에 준하는 금액 지원

○ 기자재비 : 개소당 2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신축(매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

※설계용역비·부지매입비·관리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국공립 어린이집 병행 설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과 별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가능 (최대 2억5천1백)

나. 수행실적 보고

○ 국고보조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다.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국고보조를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보육, 건축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설 적합성 자체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적합성 평가 고려사항▐

1	기능 적합성	사업목적(일시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의 시설 적합성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 및 설비 효율성
		부모 및 영유아(장애아 포함)의 편의를 고려한 유기적 배치
2	이용 안전성	영유아의 이용을 고려한 공간과 설비의 안전성
3	지속 가능성	이용수요 및 소요예산을 고려한 시설·공간의 장기적 활용가능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대상 선정지역】

○ 2011년 : 대구, 대전, 울산 중구
○ 2012년 : 부산 사상, 경기 용인, 전북 익산
○ 2013년 1차 : 부산 진구, 충북 청주, 전북 고창, 경북 문경, 경남 진주
○ 2013년 2차 : 대구 동구, 울산 울주, 경기 수원·성남·부천·시흥·광명·광주·김포·오산·고양, 경남 합천
○ 2014년 : 경북 김천, 전남 순천
○ 2015년 : 제주 서귀포
○ 2016년 : 강원 원주, 경기 여주, 경기 양주, 전남 여수, 공모 2개소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 인　쇄 : 2016년　3월

◎ 발　행 : 2016년　3월

◎ 발행처 : 보건복지부

편집·인쇄 : **(주)이문기업(Tel. 044-866-1610)**